業種專門化施策의 現況, 評價 및 向後 金融支援政策의 方向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최근 國際競爭力 危機論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1980년대 말 景氣沈滯를 겪으면서 제기되었다가 최근 수년간 몇몇 분야의 수출호조로 성장이 지속되면서 잠잠하던 國際競爭力 危機論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말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재벌의 지나친 業種多邊化와 이에 따른 投資深化의 실패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가 業種專門化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의 형태로 실현된 것이 바로 1991년에 도입된 主力業體制度이다.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도 제도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국제경쟁력 위기론이 재론되고 있다면 이는 同 制度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재벌에 대한 金融規制 緩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기업 관련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業種專門化施策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규제완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기존의 對財閥政策의 하나인 業種專門化施策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최근 「新財閥政策」으로 대변되고 있는 정부의 對財閥政策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本 政策報告書는 業種專門化施策의 現況을 살펴보고, 同 施策에 대한 評價를 시도한 후 향후 바람직한 金融支援政策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本 政策報告書는 本院의 李基榮 博士가 집필하였다.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자를 대신하여 본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審査者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 및 원고정리를 도와준 李貞美 研究員, 尹惠順 研

究助員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著者 個人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1996年 9月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Ⅰ. 序　論 …… 9

Ⅱ. 業種專門化施策의 導入背景 및 目的 …… 11

1. 業種專門化施策의 導入背景 …… 11

2. 業種專門化施策의 目的 …… 14

가. 國際競爭力의 強化 …… 14

나. 競爭力있는 關聯企業群의 形成 …… 14

Ⅲ. 現行 業種專門化施策의 內容 및 現況 …… 16

1. 業種專門化施策의 主要 內容 …… 16

가. 適用對象 …… 16

나.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選定 …… 16

다. 業種專門化誘導施策의 內容 …… 17

2.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現況 …… 19

Ⅳ. 業種專門化施策의 問題點 …… 25

1. 業種專門化論理의 妥當性 …… 25

2. 業種專門化 誘導를 위한 政府의 役割 …… 28

3. 政策目標의 優先順位와 政策手段의 適合性 …… 29

4. 主力業體 選定의 問題點 …… 31

Ⅴ. 業種專門化施策에 대한 評價 …… 34

1. 業種專門化施策의 個別 手段에 대한 評價 …… 34

가. 與信限度管理 例外 認定 …… 34
나. 出資總額制限 緩和 …… 38
다.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例外認定 …… 40
라. 海外證券 發行時 優待 …… 40
2. 主力企業의 企業成果 分析 …… 41
가. 財務構造 및 金融費用 …… 42
나. 收益性 및 成長性 …… 45
다. 綜 合 …… 49
3. 과도한 多角化의 抑制效果 …… 49
4. 綜合的 評價 …… 51

Ⅵ. 結論 : 向後 金融支援政策의 方向 …… 53
1. 偏重與信抑制制度의 必要性 …… 53
2.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實效性 提高 …… 60
3. 同一人 與信限度의 例外認定措置의 最小化 …… 62
4. 綜 合 …… 64

參考文獻 …… 66

〈附錄 1〉 主力企業과 所屬大企業集團의 資產 資本比率 推移
(1990～1994) …… 68
〈附錄 2〉 主力企業의 負債比率 現況(1991～1994) …… 78
〈附錄 3〉 主力企業의 內部持分率 現況(1991～1994) …… 79
〈附錄 4〉 主力企業의 自己資本比率 推移(1991～1994) …… 81
〈附錄 5〉 業種專門化施策 關聯 主要 規定 …… 83

表 目 次

〈表 Ⅱ－ 1〉 政府의 對財閥政策 槪要 …… 12
〈表 Ⅲ－ 1〉 32大 企業集團의 主力業種 및 118個 主力企業 …… 21
〈表 Ⅲ－ 2〉 選定된 主力業種과 主力企業의 數 …… 22
〈表 Ⅲ－ 3〉 主力業種의 그룹내 比重과 順位 …… 23
〈表 Ⅳ－ 1〉 多角化 類型의 國際比較 …… 26
〈表 Ⅳ－ 2〉 財閥의 系列企業과 營爲業種數 …… 27
〈表 Ⅳ－ 3〉 代表系列社가 그룹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 27
〈表 Ⅳ－ 4〉 30大 系列企業群 主力企業의 負債比率 現況
(1994년 말 현재) …… 30
〈表 Ⅳ－ 5〉 與信管理制度의 目標와 手段 …… 32
〈表 Ⅳ－ 6〉 系列別 主力企業 變動 現況(1994. 4. 1) …… 33
〈表 Ⅴ－ 1〉 30大 系列企業群의 貸出金占有 및 主力企業 貸出金
現況 …… 35
〈表 Ⅴ－ 2〉 銀行貸出金 中 中小企業貸出金의 比重 推移 …… 36
〈表 Ⅴ－ 3〉 30大 系列企業群의 貸出金 增加率 추이
(1989～1995) …… 37
〈表 Ⅴ－ 4〉 30大 系列企業群 主力企業의 內部持分率 現況
(1994년말 현재) …… 38
〈表 Ⅴ－ 5〉 出資總額限度制度의 施行成果 : 30大 企業集團 …… 40
〈表 Ⅴ－ 6〉 企業의 資產 資本 및 金融費用關係 比率 …… 43
〈表 Ⅴ－ 7〉 主力企業과 外國企業의 財務構造 관련 比率의 推移 … 44
〈表 Ⅴ－ 8〉 企業의 收益性 比率 …… 46
〈表 Ⅴ－ 9〉 主力企業과 外國企業의 營業 및 經常利益率 推移 …… 47

〈表 Ⅴ－10〉 企業의 成長性 關聯 比率 …… 48
〈表 Ⅴ－11〉 30大 企業集團의 系列會社 및 營爲業種數 …… 50
〈表 Ⅵ－ 1〉 30大 企業集團의 非銀行 金融機關 所有現況
(1995년 말 기준) …… 54
〈表 Ⅵ－ 2〉 30大 企業集團의 債務保證 現況 …… 58

Ⅰ. 序 論

1989년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國際競爭力 危機論이 대두되었고, 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서 재벌의 지나친 업종다변화와 이에 따른 投資深化의 실패가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業種專門化를 강력히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6월 최초의 專門化誘導施策이라고 할 수 있는 주력업체제도가 시행되었다. 그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主力業體制度는 業種專門化施策으로 바뀌고 정책의 내용과 수단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정부 주도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이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다소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 경제의 여건하에서 輸出實績이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가 여전히 노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業種專門化施策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大企業集團의 主力業種을 구성하고 있는 電氣電子·化學·機械 등의 산업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 주력업체의 기업성과는 우리나라의 輸出 및 成長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즉 이들 主力業體의 競爭力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과와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주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支援政策의 實效性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한편 業種專門化施策의 골간은 기존의 재벌에 대한 規制緩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新財閥政策」으로 표현되는 일련의 대재벌 관련 정책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한창이고, 規制緩和의 必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業種專門化施策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對財閥政策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현행의 업종전문화시책은 대부분 金融支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금융의 自律化·開放化로 대변되는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기 위한 金融支援政策의 효과 및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業種專門化施策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향후 바람직한 金融支援政策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현행의 업종전문화시책이 금융지원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지원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第Ⅱ章에서는 業種專門化施策의 導入背景과 目的을 살펴보았고, 第Ⅲ章에서는 현행 업종전문화시책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第Ⅳ章에서는 業種專門化施策의 問題點을 지적하였으며, 第Ⅴ章에서는 업종전문화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第Ⅵ章에서는 업종전문화 관련 金融支援政策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였다.

Ⅱ. 業種專門化施策의 導入背景 및 目的

1. 業種專門化施策의 導入背景

政府의 다양한 대재벌정책(〈表 Ⅱ-1〉을 참조) 가운데 業種專門化施策만큼 도입여부를 놓고 論難이 많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1989년 이후 景氣沈滯를 겪으면서 國際競爭力 危機論이 대두되었고, 競爭力 低下의 주요 원인으로는 재벌의 지나친 業種多邊化와 이에 따른 投資深化의 실패가 지적되어 왔다. 즉 경상수지 악화와 물가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製造業 空洞化와 製造業 競爭力 弱化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大企業集團의 集中된 所有와 非效率的인 經營資源의 運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공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業種專門化를 강력히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1991년 6월 최초의 전문화유도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主力業體制度'가 시행되었다[1]. 즉, 주력업체제도는 당시의 심각한 불황과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응한「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것이다.

主力業體制度는 기본적으로 與信管理制度上의 規制緩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30대 재벌의 76개 계열사를 主力業體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與信管理制度上의 與信限度管理(바스켓관리), 自救努力義務 등의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였다. 결국 주력업체제도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완화를 통해 업종전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발상에 기

1) 1986년에 제정된「산업합리화지원제도」에서는 합리화 목적의 하나로 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의 정리를 통한 전문화유도시책이 시행된 바 있다.

〈表 Ⅱ－1〉 政府의 對財閥政策 槪要

	정책목적	정책주체	정책수단	구체적인 내용
업종전문화	전문화 유도	통상산업부	여신완화 규제완화	각 기업이 작성한 업종전문화 계획에 의해 주력 및 관련업종 중심으로 전문화 유도
여신관리제도	편중여신 완화 재무구조 개선	재경원	여신관리	총자산기준 30대계열기업 여신한도 관리
출자규제	경제력 집중억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25%로 제한
상호지급보증 제한	상호지급보증 축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그 규모를 축소
기업공개 촉진	경제력 집중 억제	재경원 증권감독원	공개기업에 대한 우대	자본시장육성법, 법인세법 등 각종법규를 통해 공개유도
상속증여세 강화	기업소유의 가족 승계 방지	국세청	세제	공익법인 이용 변칙상속·증여규제·고액자산가 자산변동상황 관리체계마련
무의결권주발행 제한	소유분산 전문경영 체제확립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제정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를 현행 1/2에서 1/4까지 축소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재무구조개선 정보제공	재경원	外監法 제정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화, 외부감사의무화

資料 : 국회 기업전문화연구회, 『기업전문화(Ⅰ)』, 1995. 2.

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主力業體制度는 대기업들까지 不況으로 고전을 하고 여타의 財閥規制가 強化되던 1991년에 導入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妥當性에 대한 논의가 公論化되지는 못했지만 정부 안팎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진지하게 제기된 바 있다. 主力業體制度에 대한 반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

해 이루어졌다 : ① 開放化時代에 주력업체제도는 「industrial targeting」으로 인식되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② 業種專門化는 企業自律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며 政府主導에 의해 추진될 성질이 아니다. ③ 주력업체제도는 업체 중심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관련 기업들간의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무시하는 것이다. ④ 몇몇 주력업체에 대하여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競爭力強化와 業種專門化가 달성될 수는 없다. ⑤ 業種의 潛在性이나 業體의 競爭力을 보고 주력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財務構造가 脆弱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고, 자금의 전용을 막을 수 없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제5개년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主力業體制度'는 '業種專門化施策'으로 바뀌고 정책의 내용과 수단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業種專門化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開放化 및 國際化에 따라 국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므로 大規模企業集團이 非關聯多角化를 지양하고 「주력업종」에 한정된 財源을 집중 투자하여 業種의 專門化를 촉진한다. ② 先進國의 일류기업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주력기업」의 大型化와 一流企業化를 誘導한다. ③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술융합 등 기술의 上昇效果가 극대화되도록 關聯多角化를 통해 産業競爭力을 제고한다. ④ 정부의 支援 및 유도시책을 통해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뒷받침함으로써 업종전문화를 촉진한다. 이상과 같은 신경제 5개년계획상의 業種專門化施策方向을 골자로 하여, 1993년 11월 상공자원부는 '大規模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施策 推進方案'을 고시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시책에 따라 총 32개 企業集團은 총 118개의 主力企業을 선정하였으며, 1994년 1월 상공자원부는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최종 확정하였다(〈表 Ⅱ－1〉을 참조). 이후에도 業種專門化施策의 手段은 公正去來法 및 銀行法 施行令의 改正 등을 통해 多樣化되어 왔다.

2. 業種專門化施策의 目的[2)]

가. 國際競爭力의 強化

지난 20~30년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저임의 노동력, 政府의 國內産業保護 및 輸出支援政策 등에 힘입어 지속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속히 변해감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성장 및 수출증대는 한계에 이르렀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는 대외지향적 산업전략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은 시대적 상황 및 그 나라가 처한 經濟與件에 따라 바뀌는데 향후에는 技術과 企業經營 및 組織의 革新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企業經營 및 組織革新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집단이 국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국내경영자원을 여러부문으로 분산시키기보다는 미래 성장산업 등에 재분배 내지는 집중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집중은 기술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도록 關聯製品 및 關聯技術을 중심으로 한 專門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우위가 확보되면 대형화도 쉽게 이룰 수 있게 된다.

나. 競爭力 있는 關聯企業群의 形成

大規模企業集團의 非關聯多角化는 다음과 같은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지적된다 : ① 각 기업집단의 한정된 자원을 계열기업간에 分散·

---

2) 산업연구원(1995)을 참조.

配分해야 하므로 기업집단 내 유망분야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② 계열기업들이 相互出資 및 相互支給保證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계기업의 시장퇴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원활한 産業構造調整에 방해된다. ③ 특정산업분야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인식되게 되면 투자의 선점효과를 노린 대기업집단들이 서로 다투어 진출하게 되어 해당산업에서 과잉·중복투자가 이루어지기 쉬우며, 이 결과 設備投資의 稼動率이 低下되거나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생산규모를 갖게 된다. ④ 무분별한 非關聯多角化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 ⑤ 계열기업간의 과다한 내부거래는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켜 市場競爭構造를 바람직하지 않게 한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이 業種專門化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선진국에 비해 규모의 경제가 미비한 점이나 기술집약적인 사업에 늦게 참여한 시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상호관련이 높은 몇 개의 분야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규모의 경제 시현 및 技術革新 등의 catch-up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둘째, 業種專門化를 통하여 기업집단의 人的·物的 資源이 주력업종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投資深化效果를 기대할 수 있으며, 投資深化로 인해 主力企業間의 有效競爭이 더욱 격화되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셋째, 제품의 설계, 핵심부품과 소재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국제적인 마케팅전략 구축 등을 포괄하는 기업경영활동은 전문업종 내에서 關聯多角化를 이룰 경우 범위의 경제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Ⅲ. 現行 業種專門化施策의 內容 및 現況

1. 業種專門化施策의 主要 內容

가. 適用對象

資産總額基準 30대 企業集團과 30대 企業集團에는 속하지 않지만 與信管理規制를 받고 있는 企業集團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참여여부는 企業集團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3]. 한편 1995년도부터 資産總額 및 金融機關 貸出金의 變動으로 인하여 30대 企業集團에 변경이 있을 경우 每年 適用對象이 변경된다.

나.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選定

1) 主力業種

주력업종은 업종전문화 시책상 15개 분류업종 중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및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12개 업종[4]을 대상으로 하여 선정된다. 기업집단별 매출액, 대출금, 영위업종 숫자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

3)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산총액기준 30대 기업집단과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금 기준 30대 기업집단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여신관리대상(대출금기준 30대)에는 속하나 공정거래대상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고 있다.

4) 식료품제조업, 섬유·의복제조업, 목재·종이·가구제조업, 에너지자원산업, 화학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제조업, 기계장치제조업, 전기·전자 및 정보산업, 자동차 및 기타 수송기계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및 운수창고업.

반영하여 資產總額基準 上位 10대 企業集團은 3개 업종 이내, 11대 以下 企業集團은 2개 업종 이내에서 주력업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주력업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主力業種을 선정하도록 하는 반면에 신규참여 업종은 주력업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5].

2) 主力企業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에서 專業率이 70% 이상이고 賣出額 比重이 10% 이상인 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3)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變更·追加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은 3년 이내에는 변경될 수 없으며, 企業集團의 資產總額 및 金融機關 貸出金의 變動으로 上位 10대 企業集團에 進入한 경우는 主力業種의 追加選定이 可能하다. 또한, 비주력업종에 속한 상당수의 계열기업을 완전 매각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1개 주력업종 또는 주력업종에 속한 2개 주력기업을 추가로 선정 가능하다.

다. 業種專門化誘導施策의 內容

1) 與信管理規制의 緩和

기존의 여신관리제도에 의하면 總貸出基準 5대 및 30대 계열에 대한 銀行貸出金이 銀行別 總貸出金의 일정비율 이내로 되도록 與信限度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유도시책에 따라 기업집단별로 3개 이내의 主力企業(主力業體)을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켜

5) 그러나 일단 신규업종에 진출이 실현되고 어느 정도 경쟁기반이 갖추어진 이후에는 이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18개의 주력기업 중 78개의 기업은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40개사는 여전히 바스켓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주력기업의 영위업종과 관련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와 주력기업의 제품생산에 제공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 등의 경우에는 自救努力義務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1994.1 ; 여신관리 시행세칙 개정).

2) 海外金融의 圓滑化

海外證券 發行物量 조정시 主力企業인 경우 非主力企業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1994. 3 ;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기준" 개정).

3) 公正去來法上의 出資總額制限 緩和

기존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의하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기업의 他企業에 대한 出資는 自己純資産의 25% 이내로 制限(공정거래법 제10조)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유도시책에 따라 非主力企業이 主力企業에 투자하거나 主力企業이 主力業種 영위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7년간 出資總額制限의 例外를 認定받고 있다(1995. 4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4) 銀行法上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制限緩和

은행법(제27조)상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의하면 대출한도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15%, 지급보증한도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30% 한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유도시책에 따라 金融機關의 동일인 대출한도 및 채무보증한도에서 주력기업인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995. 4 ; 은행법 시행령 개정).

5) 其 他

이 외에 政府主導 技術開發事業에 主力企業을 優待하고(1994. 2 ; "공

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요령" 개정), 工場立地面에서 優待措置方案을 講究하고 있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중).

2.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의 現況

1993년 11월 業種專門化政策의 고시 이후 1994년 1월 상공자원부는 32개의 기업집단에 대해 118개의 주력기업을 확정·발표하였다(〈表 Ⅲ-1〉을 참조). 이를 업종별로 재분류하여 보면 각 企業集團이 선택한 主力業種이 12개 분야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表 Ⅲ-2〉를 참조). 우선 선정된 업종 중 가장 많은 것은 유통운수(16개 기업집단), 화학(11개 기업집단), 건설(9개 기업집단) 등이며 반면에 적게 선정된 업종은 섬유의복(2개 기업집단) 및 목재가구(해당 기업집단이 없음) 등이다. 한편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업종 등 당분간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할 분야를 주력업종으로 선정한 기업집단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상위 기업집단에 편중되어 있다. 주력업종과 함께 각 기업집단이 선정한 주력기업 수에 있어서도 유통운수(23개 기업), 화학(22개 기업), 건설(13개 기업)의 순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9개 기업), 전기·전자(7개 기업), 기계(5개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놓고 볼 때 기술 및 자본분야 산업의 경우는 기존의 과점적 시장구조를 반영하여 소수의 기업집단만이 주력업종으로 선정한 반면 유통, 건설 등은 그룹 내 내부거래 차원에서 수직적 통합의 목적으로 많은 기업집단들이 주력업종으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Ⅲ-3〉은 각 기업집단의 주력업종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선정된 업종들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집단에 따라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을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비중과 순위에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업종을 선정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ⅰ) 기업집단이 실제의 주력여부와 관계없이 원활한 자금

조달의 목적 등으로 주력업종을 선정하였거나, (ii) 현재의 비중보다는 미래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주력업종을 선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집단의 주력기업들이 반드시 그룹전체의 매출액 중 최상위 기업은 아니지만 선정된 주력업종 내에서는 대체로 최대기업으로서 국내시장에서 대부분 독과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表 Ⅲ－1〉 32大 企業集團의 主力業種 및 118個 主力企業

연번	그룹명	주력업종	주력기업
1	현 대	전기전자, 자동차, 에너지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차서비스, 현대정유*, 세일석유
2	삼 성	전기전자, 기계, 화학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삼성종합화학*, 삼성석유화학
3	대 우	기계, 자동차, 유통운수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
4	L G	전기전자, 화학, 에너지	LG전자*, LG반도체*, LG화학*, LG석유화학, 호남정유, 세방석유
5	선 경	에너지, 화학, 유통운수	유공*, 흥국상사, SKI*, SKC*, 선경, 유공해운
6	한 진	기계, 유통운수, 건설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건설*, 한진종합건설
7	쌍 용	에너지, 비금속, 자동차	쌍용정유*, 범아석유, 쌍용양회*, 쌍용자동차*
8	기 아	자동차, 철강	기아자동차, 아세아자동차*, 기아기공* 기아특수강*
9	한 화	에너지, 화학, 유통운수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 한양유통
10	롯 데	식료품, 화학, 유통운수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햄우유, 호남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역사
11	금 호	화학, 유통운수	금호*,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12	대 림	건설, 비금속	대림산업, 대림요업*, 대림콘크리트*
13	두 산	식료품, 건설	동양맥주*, 두산음료*, 두산종합식품, 두산건설*, 두산개발
14	동 아	건설, 유통운수	동아건설*, 대한통운*
15	한 일	섬유의복, 건설	한일합섬*, 경남모직*, 한효건설*
16	효 성	화학, 전기전자	동양나일론*, 동양폴리에스테르*, 효성바스프, 효성중공업*
17	동국제강	철강, 유통운수	동국제강*, 한국철강*, 연합철강*, 국제통운, 천양항운
18	삼 미	유통운수, 철강	삼미*, 삼미종합특수강*
19	한 라	자동차, 기계	만도기계*, 한라공조*, 한라중공업
20	동 양	전기전자, 유통운수	동양SHL, 동양매직, 동양마트
21	코오롱	화학, 유통운수	코오롱*, 코오롱유화*, 코오롱상사*
22	진 로	식료품, 유통운수	진로*,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종합유통, 청주진로백화점
23	동 부	철강, 유통운수	동부제강*, 동부산업*, 동부고속*
24	고 합	화학, 유통운수	고려합섬*, 고려종합화학, 고려석유화학*, 고합물산*
25	극 동	건설, 비금속	극동건설*, 국제종합건설*, 극동요업*
26	우 성	건설, 유통운수	우성건설*, 우성유통*
27	해 태	식료품, 유통운수	해태음료, 해태산업, 해태상사*, 해태유통*
28	벽 산	비금속, 건설	벽산*, 벽산건설*, 벽산개발*
29	미 원	식료품, 화학	미원, 미원유화
30	삼 양	식료품, 화학	선일포도당*, 삼양사*, 삼남석유화학*
31	한 보	철강, 건설	한보철강*, 한보
32	동국무역	섬유의복	동국무역, 동국방직, 동국합섬

註 : * 표시는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78개)임.

資料 :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백서』, 1995.

〈表 Ⅲ－2〉 選定된 主力業種과 主力企業의 數

	선정그룹 (그룹순위, 주력기업 수)	선정그룹수(주력기업 계)
1. 식 료 품	롯데(10, 3), 두산(13, 3), 진로(22, 3), 해태(27, 2), 미원(29, 1), 삼양(30, 1)	6(13)
2. 섬유의복	한일(15, 2), 동국무역(32, 3)	2(5)
3. 목재가구		0(0)
4. 에 너 지	현대(1, 2), LG(4, 2), 선경(5, 2), 쌍용(7, 2), 한화(9, 1)	5(9)
5. 화 학	삼성(2, 2), LG(4, 2), 선경(5, 2), 한화(9, 2), 롯데(10, 1), 금호(11, 2), 효성(16, 3), 코오롱(21, 2), 고합(24, 3), 미원(29, 1), 삼양(30, 2)	11(22)
6. 비 금 속	쌍용(7, 1), 대림(12, 2), 극동(25, 1), 벽산(28, 1)	4(5)
7. 철 강	기아(8, 2), 동국제강(17, 3), 삼미(18, 1), 동부(23, 1), 한보(31, 1)	5(7)
8. 기 계	삼성(2, 2), 대우(3, 1), 한진(6, 1), 한라(19, 1)	4(5)
9. 전기전자	현대(1, 1), 삼성(2, 1), LG(4, 2), 효성(16., 1), 동양(20, 2)	5(7)
10. 자 동 차	현대(1, 2), 대우(3, 1), 쌍용(7, 1), 기아(8, 2), 한라(19, 2)	5(9)
11. 건 설	한진(6, 2), 대림, (12, 1), 두산(13, 2), 동아(14, 1), 한일, (15, 1), 극동(25, 2), 우성(26, 1), 벽산(28, 2), 한보(31, 1)	9(13)
12. 유통운수	대우(3, 1), 선경(5, 2), 한진(6, 2), 한화(9, 1), 롯데(10, 2), 금호(11, 1), 동아(14, 1), 동국제강(17, 2), 삼미(18, 1), 동양(20, 1), 코오롱(21, 1), 진로(22, 2), 동북(23, 2), 고합(24, 1), 우성(26, 1), 해태(27, 2)	16(23)
	계	(118)

資料 : 산업연구원(1995).

〈表 Ⅲ-3〉 主力業種의 그룹 내 比重과 順位

(單位 : %)

연번	그룹명	유형	주력업종	그룹 내 비중	순위	비고		
1	현대	A	전기전자	3.7	5/11	유통운수	35.5	1/11
			자동차	29.4	2/11	건설	11.6	3/11
			에너지	3.0	7/11	기계	8.3	4/11
2	삼성	A	전기전자	21.5	3/12	유통	33.8	1/12
			기계	5.9	4/12	금융	22.9	2/12
			화학	1.8	9/12	건설	4.0	5/12
3	대우	A	기계	16.7	3/7	전기전자	16.9	2/7
			자동차	11.8	4/7			
			유통운수	50.3	1/7			
4	LG	A	전기전자	30.4	1/10	유통	20.2	3/10
			화학	10.8	4/10			
			에너지	20.3	2/10			
5	선경	B	에너지	54.6	1/9	건설	6.4	4/9
			화학	10.0	3/9			
			유통운수	27.8	2/9			
6	한진	B	기계	6.9	4/7	금융보험	10.0	3/7
			유통운수	64.7	1/7			
			건설	13.9	2/7			
7	쌍용	A	에너지	29.2	2/10	유통운수	31.8	1/10
			비금속	11.2	4/10	건설	13.0	3/10
			자동차	4.2	6/10	금융보험	4.2	5/10
8	기아	B	자동차	93.0	1/5	유통운수	4.9	2/5
			철강	2.1	3/5			
9	한화	A	에너지	28.0	1/9	금융보험	11.1	4/9
			화학	24.9	2/9			
			유통운수	19.9	3/9			
10	롯데	A	식료품	29.8	1/10	건설	10.6	3/10
			화학	6.9	6/10	금융보험	10.3	4/10
			유통운수	27.0	2/10	기타(호텔등)	7.8	5/10
11	금호	A	화학	47.6	1/4	건설	35.1	2/4
			유통운수	16.3	3/4			
12	대림	A	건설	79.8	1/6	자동차	6.9	2/6
			비금속	3.0	5/6	유통운수	6.4	3/6
13	두산	A	식료품	42.0	1/8	유통운수	14.2	3/8
			건설	21.3	2/8			
14	동아	B	건설	46.1	1/4	금융보험	39.5	2/4
			유통운수	13.8	3/4			
15	한일	B	섬유의복	43.8	1/7	유통	32.0	2/7
			건설	4.0	5/7	화학	9.0	3/7

〈表 Ⅲ-3〉의 계속

(單位 : %)

연번	그룹명	유형	주력업종	그룹 내 비중	순위	비고		
16	효성	A	화학	35.0	2/6	유통운수	52.4	1/6
			전기전자	11.8	3/6			
17	동국제강	B	철강	60.4	1/7	금융보험	17.0	2/7
			유통운수	2.7	5/7	건설	12.0	3/7
18	삼미	B	유통운수	55.2	1/6	기계	7.6	3/6
			철강	36.7	2/6			
19	한라	B	자동차	51.5	1/6	비금속	12.8	3/6
			기계	15.4	2/6			
20	동양	A	전기전자					
			유통운수					
21	코오롱	A	화학	36.5	2/8	건설	11.8	3/6
			유통운수	44.8	1/8			
22	진로	B	식료품	46.2	1/8	건설	16.2	3/8
			유통운수	23.7	2/8			
23	동부	A	철강	26.9	2/5	금융보험	27.3	1/5
			유통운수	23.2	3/5			
24	고합	B	화학					
			유통운수					
25	극동	B	건설	69.4	1/5	금융보험	28.1	2/5
			비금속	2.1	3/5			
26	우성	B	건설	79.5	1/4	화학	9.3	2/5
			유통운수	8.3	3/4			
27	해태	B	식료품	57.3	1/5	전기전자	9.1	3/5
			유통운수	31.3	2/5			
28	벽산	A	비금속	16.7	3/9	기계	19.0	2/9
			건설	56.5	1/9			
29	미원	B	식료품	40.9	1/9	금융보험	20.5	2/9
			화학	15.7	4/9	유통	17.0	3/9
30	삼양	A	식료품					
			화학					
31	한보		철강					
			건설					
32	동국무역		섬유의복					

註 : 1992년 매출액 기준임.

資料 : 산업연구원(1995).

Ⅳ. 業種專門化施策의 問題點

1. 業種專門化論理의 妥當性

業種專門化施策의 背景에는 '專門化 = 競爭力 強化', '문어발식 多角化 = 非效率'이라는 等式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多角化와 專門化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一義的인 理論은 없는 상태이다. 規模의 經濟가 대표적인 전문화의 논리라면, 範圍의 經濟, 산업포트폴리오에 따른 危險管理와 景氣變動에의 適應能力, 시너지의 活用 등이 다각화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6].

실제로 우리나라 企業集團의 多角化와 經營成果(成長性, 收益性, 安定性)에 관한 기존의 연구의 결과를 보더라도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동성(1990)은 多角化가 收益性 및 成長性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구현(1991)은 다각화가 성장성은 높이나 수익성은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강신일(1991)은 다각화가 수익성을 제고시켰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安定性에 관해서도 양원근(1992)은 과도한 多角化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 반면에 김영욱(1993)은 多角化가 安定性 提高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연구사례를 보더라도 다각화가 항상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일치된 결론은 얻을 수가 없다[7].

---

6) 이 외에도 다각화의 동기로서 선발기업의 이익(first mover advantage), 거래비용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7) Hassid(1974)는 영국의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각화된 기업이 다각화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 50% 빨리 성장하였음을 발견하였고, Lecraw(1984)는 캐나다의 기

또한 世界의 一流企業 중에도 專門化企業과 多角化企業은 混在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항상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Philip Morris는 다각화된 기업인 반면에 Kodak은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기업이며, British Steel은 전문화된 기업인데 같은 제철회사인 신일본제철은 다각화를 적극 추진한 바 있다[8].

우리나라 財閥의 業種多角化가 外國大企業에 비해 非關聯多角化의 比重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재벌들 스스로 專門化를 지향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의 비중은 약 57%로서 미국(19.4%), 일본(6.8%), 영국(6.0%)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表 Ⅳ-1〉을 참조). 한편 상위 5대 재벌의 경우 계열사수는 평균 40개를 상회하고 영위업종 또한 30.4개에 이르고 있으나(〈表 Ⅳ-2〉를 참조), 그룹 賣出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수의 계열사와 업종뿐이며 소수 정

〈表 Ⅳ-1〉 多角化 類型의 國際比較

(單位 : %)

유 형 / 국 가	한국(1989)	일본(1973)	미국(1969)	영국(1970)
전 업 형	8.2	16.9	6.2	6.0
본 업 형	28.6	36.4	29.2	34.0
관 련 형	6.1	39.9	45.2	54.0
비 관 련 형	57.1	6.8	19.4	6.0

資料 : 서울대 경영연구소(1993),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재벌정책』, p. 11에서 인용

업자료를 이용하여 단일 업종이나 관련다각화가 수직적 통합이나 비관련다각화보다 성과가 평균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기업경영성과와 산업구조와의 관계를 연구한 산업조직론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업종다변화와 경영성과는 대부분 중립적 또는 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회사차원(corporate level)의 업종다변화가 개별기업(plant level)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업종다변화는 개별기업의 생산성에 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ntgomery(1994)).

8) 그러나 신일본제철의 경우 제철부문의 비중을 하향조절할 목적으로 시도한 신규사업(통신판매, 해외컴퓨터 사업 등)의 성과가 저조함에 따라 기존의 다각화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바 있다.

예계열사와 정예업종이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수준을 점하고 있다(〈表 Ⅳ－3〉을 참조). 결국 그룹계열사와 영위업종의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專門化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表 Ⅳ－2〉 財閥의 系列企業과 營爲業種數

(單位 : 個)

	5대	현대	삼성	대우	LG	선경	30대
계열기업[1]	210	49	50	25	53	33	616
영위업종수[2]	30.4	36	34	27	32	23	19.1

註 : 1) 1994년 6월.
2) 1993년 2단위 KSIC 기준.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表 Ⅳ－3〉 代表系列社[1]가 그룹賣出額에서 차지하는 比重

(單位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삼 성	91.25	91.16	91.32	92.24	90.21	87.34	83.45[2]
현 대	75.37	71.58	72.77	74.40	73.94	73.17	72.35
L G	73.93	70.06	70.24	70.09	68.46	68.90	68.17
대 우	90.35	90.72	88.49	87.40	87.15	77.14	76.54

註 : 1. 삼성생명의 경우 매출액 대신 수입보험료를 이용.
1) 삼성 :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 :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건설.
LG : LG상사, LG전자, LG반도체, 호남정유, LG화학.
대우 :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2) 1994년 삼성생명의 경우 1994년 3월 결산자료를 대치함.
資料 :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2. 業種專門化 誘導를 위한 政府의 役割

오늘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는 기업 스스로 專門化를 추구하도록 전개되고 있으며 企業集團은 나름대로 長期戰略을 가지고 專門化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開放化의 진전으로 內需市場 및 海外市場에서 競爭이 심화되면 大企業集團의 多邊化行態는 적정한 專門化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며, 大企業集團이 향후 기술력 등 핵심적 경영자산을 축적하여 競爭力을 제고하고 國際化의 管理費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集中化·專門化戰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는 기업집단만이 생존할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政府는 企業의 意思決定 및 資源配分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政策手段을 사용하여 大企業集團의 業種專門化를 유도하기보다는 競爭을 통한 專門化가 이루어지도록 시장여건을 개선하는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競爭體制를 구축하여 경쟁압력을 가중시키면 기업집단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부역량의 재배분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집단들은 자금·인력·기술·정보 등의 내부역량에 비추어 業種專門化가 效率的인지 業種多角化가 효율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多邊化構造가 형성된 것은 多邊化의 利得(보호된 내수시장의 고수익, 부동산·언론사 보유에 따른 부수적 이득, 금융업 등 요소시장 참여에 따른 안정성과 경쟁우위)이 多邊化의 費用(한계기업의 발생, 전문성 결여에 따른 비효율)을 능가했고, 外部借入, 系列社 出資, 內部去來 등을 통하여 多邊化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즉 문어발식 多角化는 기업생존에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의 결과이며, 이러한 構造의 變化가 없으면 大企業集團의 多角化는 계속될 것이다[9].

---

9) 유승민(1993)은 정부의 부실기업정리시책도 기업집단의 다변화를 심화시켰으며, 과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기본적으로 銀行與信 및 直接金融에 의해서 主力企業의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業種專門化와 競爭力 強化를 도모하지만 몇몇 주력기업에 대해 資金供給을 擴大함으로써 業種專門化와 競爭力 強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競爭力이란 기업노력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실현되는 것이지 단순히 資金供給의 擴大로 競爭力 強化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競爭을 통한 專門化를 유도하는 기능이 경제전반에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의 擴大로 業種專門化가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主力企業에 대한 與信規制의 緩和는 오히려 借入依存度와 金融費用을 上昇시켜 競爭力을 弱化시킬 수도 있다.

3. 政策目標의 優先順位와 政策手段의 適合性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에 의하면 主力企業에 대해 여신관리제도상의 여신한도관리를 해제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차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나, 그 결과 財務構造의 惡化 및 所有集中의 深化의 可能性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경쟁력 강화가 財務構造 改善 및 所有集中 緩和라는 政策目標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는지의 여부

거의 다변화 억제시책은 경쟁압력의 증대, 부동산보유의 수익성 규제, 외부차입방식의 개선 등에 입각하기보다는 각종 산업정책적 규제수단을 동원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왜곡된 다변화구조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정책적 다변화규제는 (ⅰ) 여신관리제도 중 투자·부동산취득 규제, 신규업종참여 제한, 주력기업 우대, (ⅱ) 중복·과잉투자나 과다경쟁의 규제를 위한 정부의 투자조정, (ⅲ) 산업합리화 업종, 첨단산업의 투자조정을 위한 정부개입, (ⅳ)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계열화 품목의 지정을 통한 중소기업의 보호, (ⅴ) 기타 업종별 인허가, 산업영역 조정 등 경쟁 제한적 정부규제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해 왔다. 결국 지금까지의 다변화규제는 대부분 '제조업부문 내의 다변화'는 강하게 규제하면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금융산업에 대한 다변화 및 정치경제적으로 문제시되는 언론·방송업에 대한 다변화 등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규제원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승민(1993)을 참조.

와 主力業種制度의 경쟁력 제고의 肯定的 效果가 財務構造의 惡化 및 所有集中의 深化 등의 否定的 效果를 相殺할 만큼 뚜렷히 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主力企業에 대한 與信管理 解除는 大企業集團 및 經濟 內의 資源配分을 歪曲할 수 있다. 각 大企業集團은 업종의 將來性 및 系列社의 競爭力에 근거하여 主力業種 및 企業을 選定하기보다는 財務構造가 취약하거나 大規模 投資가 소요되는 業種 및 企業을 選擇하여 貸出 增大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30대 계열의 主力企業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1994년 平均 負債比率은 324.9%로 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 298.3%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30대 계열의 주력기업 중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업체가 35개사나 된다(〈表 Ⅳ－4〉를 참조).

〈表 Ⅳ－4〉 30大 系列企業群 主力企業의 負債比率 現況
(1994년 말 현재)

(單位 : 個, %)

	1~200%	201~300%	301~400%	401%이상	자본잠식	계	평균
1991	11	20	12	29	3	75	368.9
1992	8	21	11	30	3	73	375.7
1993	15	20	9	32	0	76	328.1
1994	10	23	10	35	0	78	324.9

資料 : 은행감독원.

5大 財閥의 경우 主力企業이 石油化學, 自動車, 電氣·電子, 重工業 등 大規模投資가 필요한 業種에 集中되어 同 業種에서의 獨寡占的 市場構造 深化 및 市場進入制限 등으로 競爭을 약화시키고 重複·過剩投資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上位 재벌의 경우 수십개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3개의 업체에만 主力하기 곤란하며, 대출금의 事後管理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主力企業에 대한 貸出金이 非主力企業으로 轉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편중여신의 완화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는 여신관리제도의 예외적용을 통하여 이들 목표를 희생하고 서로 상충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業種專門化의 手段으로 與信管理制度를 活用함에 따라 與信管理制度는 偏重與信 緩和, 財務構造 改善 등 고유의 목표 이외에 이들 목표와 상충할 수밖에 없는 業種專門化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고 매우 복잡한 운용체계를 가지게 되었다(〈表 Ⅳ－5〉를 참조). 장기적으로 "與信管理制度는 축소·폐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력기업에 대해서부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여신관리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보다는 "업종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신관리제도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즉 人爲的인 大型化를 통한 業種專門化誘導보다는 對內外 市場開放에 의한 競爭의 제고를 통한 專門化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主力企業 選定의 問題點

業種專門化施策에 의하면 이전의 主力企業制度와 마찬가지로 3년 경과 후에는 자유롭게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91년에 시행되었던 주력기업제도가 시행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1994년 4월 주력기업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그런데 1994년 主力業種 및 主力企業 變更時 주력기업의 변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추가된 2개 계열을 제외한 28개 계열 가운데 주력기업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10개 계열에 불과하며, 모든 주력기업이 변경된 경우도 있다(〈表 Ⅳ－6〉을 참조). 물론 주력기업의 선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와 같이 주력기업이 객관적 이유없이 빈번히 교체되는 것은 業種專門化의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며, 系列企業이 專門化 이외의 목적으로 主力企業을 選定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表 Ⅳ－5〉 與信管理制度의 目標와 手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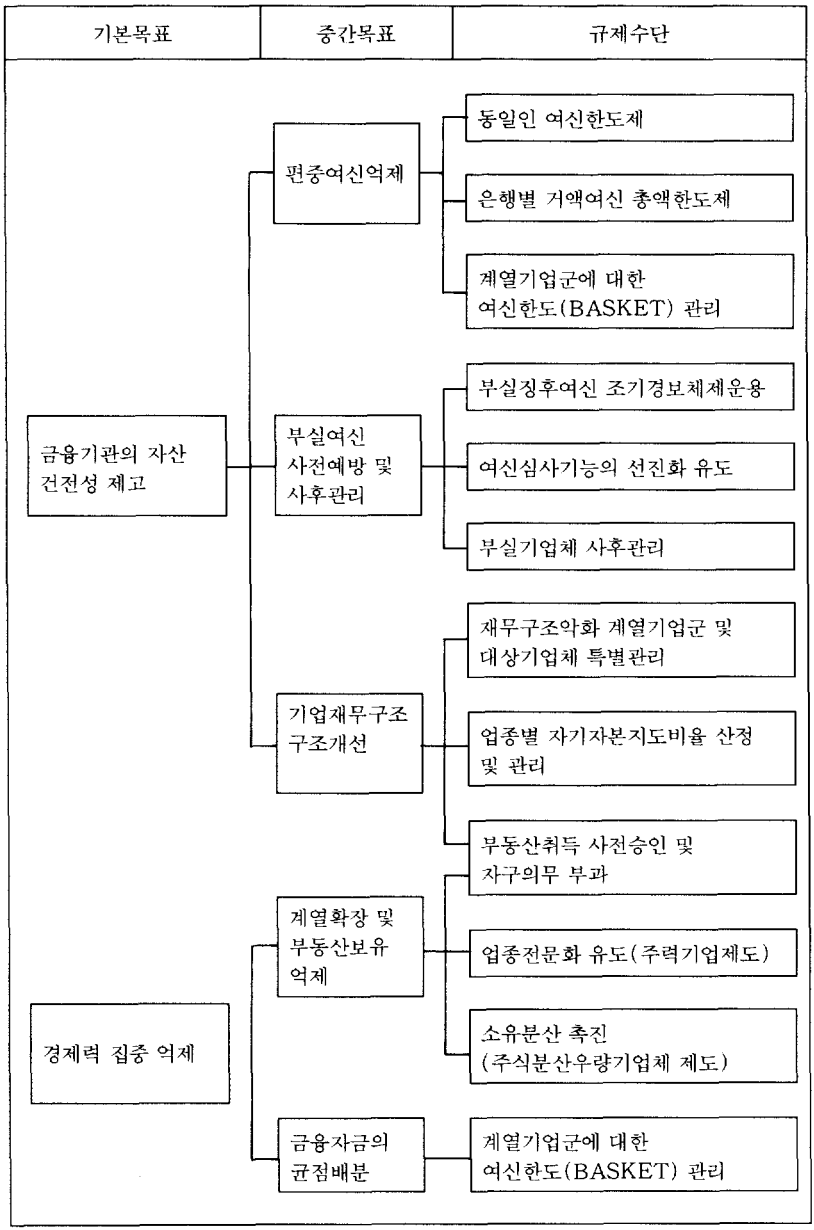

資料 : 은행감독원.

〈表 Ⅳ-6〉 系列別 主力企業 變動 現況(1994. 4. 1)

계 열 명	주력기업명	비 고
삼 성	삼성종합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종전과 동일
현 대	현대정유, 현대전자산업, 현대자동차	현대석유화학을 현대정유로 교체
대 우	대우조선공업, 대우자동차	종전과 동일
럭키금성	럭키, 금성사, 금성일렉트론	
한 진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한진건설	한진 대신 한진중공업과 한진건설 신규선정
기 아	아세아자동차공업, 기아기공, 기아특수강	종전과 동일
선 경	유공, SKC, 선경인더스트리	
쌍 용	쌍용정유, 쌍용양회공업, 쌍용자동차	
대 림	대림요업, 대림콘크리트공업	대림자동차 제외
한 일	한일합섬, 경남모직, 한효건설	한효건설 추가
한 화	경인에너지, 한양화학, 한화	종전과 동일
금 호	금호,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두 산	동양맥주, 두산음료, 두산건설	두산기계 및 두산유리를 두산음료 및 두산건설로 교체
동국제강	동국제강, 연합철강, 한국철강	종전과 동일
효 성	동양나일론, 동양폴리에스터, 효성중공업	동양폴리에스터 추가 선정
롯 데	롯데제과, 호남석유화학, 롯데쇼핑	롯데쇼핑 추가 선정
삼 미	삼미종합특수강, 삼미	삼미금속을 삼미로 교체
고려합섬	고려합섬, 고려석유화학, 고합상사	고려종합화학을 고합상사로 교체
코 오 롱	코오롱, 코오롱유화, 코오롱상사	코오롱엔지니어링을 코오롱상사로 교체
한 라	만도기계, 한라공조	한라중공업 및 한라시멘트 대신 한라 공조 선정
해 태	해태유통, 해태상사	해태전자 대신 해태유통, 해태상사 선정
동아건설	동아건설산업, 대한통운	종전과 동일
우성건설	우성건설, 우성유통	우성산업을 우성유통으로 교체 선정
동 부	동부제강, 동부산업, 동부고속	동부화학, 동부건설 대신 동부산업, 동부고속 선정
극동건설	극동요업, 극동건설, 국제종합건설	국제종합건설 추가 선정
벽 산	벽산, 벽산건설, 벽산개발	동양물산기업 대신 벽산개발 교체 선정
대한전선		┐ 1994년 신규선정계열로서 「주력
동국무역		┘ 기업」 미선정
진 로	진로, 진로종합식품	연합전선 대신 진로종합식품 교체 선정
삼 양 사	선일포도당, 삼남석유화학, 삼양사	선일포도당 추가 선정

資料 : 은행감독원.

V. 業種專門化施策에 대한 評價

1. 業種專門化 施策의 個別 手段에 대한 評價

가. 與信限度管理 例外 認定

1987년 이후 與信限度管理의 강화로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銀行貸出金이 전체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 말의 23.7%에서 1995년 말에는 13.9%로 크게 하락하였다(〈表 V-1〉을 참조). 반면에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의 조정[10] 등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정책의 지속적인 강화[11]로 은행 총대출금 중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1980년의 43.9%에서 1995년에는 60.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表 V-2〉를 참조). 이처럼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는 중소기업금융정책과 함께 제1금융권에서의 대

10) 1980년 이후 은행권에 대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조정 추이는 다음과 같다.

(單位 : %)

	1980	1985	1986	1993
시 중 은 행	35	35	35	45
지 방 은 행	55	55	80	80
외 은 지 점	—	25	25	35

11) 1980년대 이후 주요한 중소기업금융 강화정책의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공해방지시설자금 등에 대한 한국은행 대출의 신설, ② 한국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비율과 무역금융의 융자단가의 우대적용 및 우대폭의 확대, ③ 시설재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화대출 비율의 인상, ④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제도의 도입, 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이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고 보증한도 및 간이심사 확대 등을 통한 신용보증지원의 확충 등이 있다.

〈表 Ⅴ－1〉 30大 系列企業群의 貸出金占有[1] 및 主力企業 貸出金 現況

(單位 : 10억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은행금융기관								
은행 총대출금[2](A)	78,321	97,610	120,437	137,407	159,787	180,019	218,699	253,573
30대 총대출금(B)	18,572	20,235	23,818	26,788	30,372	29,938	32,483	35,2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대 관리대상 대출금(C)	13,473	12,096	13,329	12,032	12,890	12,862	14,427	14,444
	(72.5)	(59.8)	(56.0)	(44.9)	(42.4)	(43.0)	(44.4)	(40.9)
30대 관리대상제외대출금[3](D)	5,099	8,139	10,489	14,757	17,482	17,077	18,056	20,849
	(27.5)	(40.2)	(44.0)	(55.1)	(57.6)	(57.0)	(55.6)	(59.1)
주력기업대출금(E)	–	–	–	13,906	15,790	15,190	15,409	18,171
30대 대출금 점유율(B/A)	23.7	20.7	19.8	19.5	19.0	16.6	14.8	13.9
30대 관리대상 대출금 점유율(C/A)	17.2	12.4	11.1	8.7	8.0	7.1	11.2	5.7
30대 여신한도 기준비율[4]	17.5	14.7	11.1	11.0	10.7	10.9	10.6	10.0
E/B	–	–	–	51.9	52.0	50.7	47.4	51.5
E/D	–	–	–	94.2	90.3	88.9	85.3	87.1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 총대출금[5](F)	21,760	31,791	39,469	55,496	73,803	85,934	102,354	137,210
30대 총대출금(G)	7,047	11,640	14,902	20,316	26,547	31,926	38,128	52,689
30대 대출금 점유율(G/F)	32.4	36.6	37.8	36.6	35.9	37.1	37.2	38.4
(3) 금융기관 전체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A+F)	100,081	129,401	159,906	192,903	233,589	265,953	321,053	390,782
30대 총대출금(B+G)	25,169	31,875	38,720	47,103	56,919	61,864	70,610	87,981
30대 대출금 점유율((B+G)/(A+F))	25.6	24.6	24.2	24.4	24.3	23.2	21.9	21.5
B/(B+G)	72.5	63.5	61.5	56.8	53.3	48.4	46.0	40.1

註 : 1) 대출금의 범위는 국내 전금융기관(은행 및 제2금융권)의 원화 및 외화대출금, 신탁대출금 및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대출금을 포함.

2) 은행 총대출금은 예금은행, 개발기관, 은행신탁계정의 대출금의 합계임.

3) 관리대상 제외대출금 종류:
1988년말 : 특별외화대출, 제2금융권 업체에 대한 대출, 산업합리화 관련대출
1989～90년말 : 특별외화대출, 산업합리화 관련대출, 국내은행 해외지점대출, 연불금융.
1991～95년 12월말 : 주력기업대출, 주식분산 우량업체대출, 국내은행 해외지점대출, 연불금융.

4) 여신한도관리 제외대출금을 차감한 비율임. 이 비율의 관리방식은 「분기별 말잔기준」 관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3년 4월부터 「분기중 평잔기준」 관리방식으로 변경되었음.

5) 제2금융권 총대출금은 투금사, 종금사, 보험사, 리스사의 대출금의 합계임.

資料 : 은행감독원, 재정경제원, 정병휴 · 양영식(1992), p. 105.

〈表 Ⅴ-2〉 銀行貸出金[1] 中 中小企業貸出金의 比重 推移

(單位 : %)

1980	1987	1989	1991	1993	1995
43.9	48.2	50.1	56.8	59.3	60.6

註 : 1) 시중은행,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의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
資料 : 한국은행.

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편중여신의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신한도관리가 관리대상대출금에만 적용되는 여신한도기준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근년에 들어 관리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限度管理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 限度管理除外貸出의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30대 계열기업군의 管理對象貸出金이 總貸出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8년의 72.5%에서 1995년에는 40.9%로 크게 하락하여 與信限度管理의 偏重與信 緩和效果가 그만큼 낮아졌다. 특히 한도관리제외 대출금의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主力企業에 대한 대출금은 연평균 7.3%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管理對象貸出金은 연평균 1.4%의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어서(〈表 Ⅴ-3〉을 참조) 여신한도관리의 실효성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도관리제외 대출은 주력업종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0년과 비교해 볼 때 5년 동안 2배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의 경우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銀行貸出金 35조 2,930억원 가운데 51.5%인 18조 1,710억원이 主力企業에게 대출되었다[12].

12) 한편 최근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경제력 비중이 크지 아니한 11~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하여 관리대상을 1~10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1996년 4월).

결국 主力企業에 대한 與信管理 解除는 銀行貸出을 통해 이들 기업에게 資金供給을 확대한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與信限度管理의 實效性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企業集團 內의 主力企業의 높은 內部持分率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與信管理의 解除는 增資 등 直接金融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만큼 所有分散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재벌의 主力企業 中 非上場된 主力企業이 22개사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內部持分率이 50% 이상인 業體는 19개사에 달하고 있다(〈表 Ⅴ-4〉를 참조).

〈表 Ⅴ-3〉 30大 系列企業群의 貸出金 增加率 推移(1989~1995)

(單位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89~95 평균
(1) 은행금융기관								
은행 총대출금	24.6	23.4	14.1	16.3	12.7	21.5	15.9	18.4
30대 총대출금	9.4	17.2	12.5	13.4	-1.4	8.5	8.7	9.8
30대 관리대상 대출금	-10.2	10.2	-9.7	7.1	-0.2	12.2	0.1	1.4
30대 관리대상 제외대출금	59.6	28.9	40.7	18.7	-2.3	5.7	15.5	23.8
주력기업대출금[1]	—	—	—	13.5	-3.8	1.4	17.9	7.25
(2) 제2금융권								
제2금융권 총대출금	46.1	24.2	40.6	33.0	16.4	19.1	34.1	30.5
30대 총대출금	65.2	28.0	36.3	30.7	20.3	19.4	38.2	34.0
(3) 금융기관 전체								
금융기관 전체 대출금	29.3	23.6	20.6	21.1	13.9	20.7	21.7	21.6
30대 총대출금	26.6	21.5	21.7	20.8	8.7	14.1	24.6	19.7

註 : 1) 주력기업 대출금은 1991~1995 기간중 평균임.
資料 : 〈表 Ⅴ-1〉과 동일.

〈表 Ⅴ－4〉 30大 系列企業群 主力企業의 內部持分率 現況
(1994년말 현재)

(單位 : 個)

	1~10%	11~20%	21~30%	31~50%	51~99%	100%	계
1~5대	1	2	4	1	4	2	14
상장업체	1	2	4	1	1	0	9
비상장업체	0	0	0	0	3	2	5
6~30대	3	13	18	14	14	2	64
상장업체	3	13	18	11	2	0	47
비상장업체	0	0	2	3	12	2	17
30대 계	4	15	22	15	18	4	78
상장업체	4	15	22	12	3	0	56
비상장업체	0	0	0	3	15	4	22

資料 : 은행감독원.

나. 出資總額制限 緩和

出資總額制限制度는 持株的出資, 系列的出資 및 間接相互出資[13]에 의한 不合理한 企業擴張을 抑制하고 企業集團의 非關聯多角化에 의한 擴張을 抑制하기 위한 制度로서 30대 大規模 企業集團 소속 기업의 他企業에 대한 出資는 自己純資産(자기자본－계열회사로부터 출자받은 금액－국고보조금)의 25%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이미 ① 공업발전법 또는 조감법에 의한 합리화조치에 따른 출자, ② 기소유주식의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으로 인한 출자, ③ 담보권의 실행 또는 貸物辨濟 수령에 따른 출자, ④ 보유주식의 평가가 증가되어 출자총액이 출자한도

13) 持株的出資는 갑 →을, →병, →정, 系列的出資는 갑→을→병, 間接相互出資는 갑→을→병 의 형태를 취한다. 한편 직접상호출자(갑↔을)는 상호출자금지제도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액을 초과하는 경우, ⑤ 부품생산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등 많은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의 요체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각 기업이 순자산액의 일정범위 이내에서만 타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순한 규제였다는 점이며, 순자산액이 크든 작든간에 업종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출자여력을 일정비율로 정하였고 그만큼 미시적으로 기업투자에 일일이 간섭하는 규제의 부작용도 작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시책 등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면서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총량규제의 단순함이라는 강점이 희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은 평균 43.3%에 이르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중 소유·지배권 집중의 근원인 33% 수준의 계열사지분율을 하락시키도록 작용하는 유일한 정책 수단이며, 현재의 계열사지분율 수준은 너무 높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존재한다.

결국 主力企業에 대한 出資總額制限의 추가적인 예외 인정(1995. 4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他會社出資比率의 上昇, 主力企業의 內部持分率(계열사지분율) 上昇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므로 그동안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外形擴大를 總量的으로 규제하고 支配權集中을 抑制하려는 出資規制制度의 도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987~1995년 기간 동안 30대 기업집단의 他會社出資比率, 自己資本比率, 內部持分率 등은 뚜렷한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효과가 出資規制制度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系列社持分率 및 他會社出資比率의 減少는 出資規制와 밀접히 관련된다. 왜냐하면 출자총액 제한에 직면한 대기업집단들은 출자한도초과금액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든지 기존의 출자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계열사지분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유승민(1993)). 현재의 시점에서 企業集團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內部持分率 등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볼 때 30대 企業集團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所有集中은 개선할 여지가 여전히 많고 主力企業의 경우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表 Ⅴ-5〉 出資總額限度制度의 施行成果 : 30大 企業集團

(單位 : %)

	1987	1989	1991	1993	1994	1995
타회사출자비율(순자산액 대비)	43.9	28.9	32.5	28.0	26.8	26.3
자기자본비율	16.1	19.2	19.8	19.0	20.1	19.9
내부지분율	56.2	44.8	47.0	43.4	42.7	43.3
(계열사지분율)	(40.4)	(30.0)	(32.9)	(33.1)	(33.1)	(32.8)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다.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例外認定

은행법상 同一人에 대한 與信限度 規制는 金融機關 資產運用의 건전성 확보와 金融資金의 균점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金融機關의 同一人에 대한 貸出限度는 銀行 自己資本의 15%, 同一人에 대한 支給保證限度는 自己資本의 30%로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에는 ①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 ②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④ 업종전문화유도시책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조항이 있다. 예외 조항의 경우는 최대 5%의 超過限度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은행감독원의 事前承認이 필요하므로 은행들은 예외규정의 적용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1995년의 경우 10건 정도가 예외인정을 받는 데 그침으로써 主力企業을 支援하는 手段으로서의 有效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海外證券 發行時 優待

해외증권 발행물량 조정시 主力企業인 경우 非主力企業에 우선한다는 기준에 의거하여 해외증권발행물량을 허용받은 경우는 1995년도 2건에

1억 2,000만달러에 불과하다. 1995년도에 이루어진 총조정물량이 51건에 22억 9,530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주력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편이다.

2. 主力企業의 企業成果 分析

本節에서는 1991년 主力企業制度가 시행된 이후 계속하여 주력기업으로 남아있는 55개 기업의 평균적인 기업성과를 30대 기업집단, 上場企業 및 大企業(製造業), 외국의 평균적인 기업성과와 비교함으로써 주력업종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물론 표본이 되는 기간(1990~1994년)이 짧고 기업내용이 매우 다른 개별 주력기업을 평균적으로 비교함에 따른 평가의 부정확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력기업들의 평균적인 기업성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企業成果는 安定性, 收益性 및 成長性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기업의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負債比率, 借入金依存度, 自己資本比率 및 流動比率의 네 가지 지표로 평가하고, 매출액 및 총비용대비 금융비용의 비율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비교하였다. 한편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기업경상이익률 및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의 지표로 평가하고, 성장성은 총자산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로 평가하였다[14].

---

14) 부채비율 = [(유동부채+고정부채)/자본총계]×100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계)×100
자기자본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률 = (경상이익/매출액)×100
총자본경상이익률 = [(경상이익/(전기자산총계+당기자산총계)]×200
기업경상이익률 = [(경상이익+금융비용)/(전기자산총계+당기자산총계)]×200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전기자본총계+당기자본총계)]×200

가. 財務構造 및 金融費用

主力企業의 평균적인 財務構造는 여타 집단에 비해 매우 不健全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表 Ⅴ-6〉을 보면 負債比率의 경우 30대 企業集團이 357.0%, 上場企業이 298.3%, 大企業(製造業)이 282.9%인 데 비해 주력기업은 343.0%에 이르고 있으며(1994년 기준), 借入金依存度 역시 30대 기업집단이 48.4%, 상장기업이 45.7%, 대기업(제조업)이 45.7%인 데 반해 주력기업은 무려 52.6%에 이르고 있다(1994년 기준). 自己資本比率 및 流動比率에 있어서도 主力企業은 상장기업 및 대기업(제조업)에 비해 건전하지 못하며, 借入金依存度와 유동비율은 中小企業보다도 劣惡한 상태이다. 또한 個別主力企業의 財務構造가 그 주력기업이 속해 있는 大企業集團의 平均的인 財務構造에 비해서도 不健全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附錄 1〉을 참조).

이러한 主力企業의 불건전한 財務構造는 이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加重시키고 있다. 1990~1994년 기간중 賣出額 대비 金融費用의 比率 및 總費用 대비 금융비용의 비율을 보면 30대 기업집단이 大企業(製造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主力企業의 경우는 대기업(제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주력기업의 이들 비율은 中小企業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매우 과중한 金融費用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Ⅴ-6〉을 참조).

주력기업의 재무구조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脆弱性이 더욱 두드러진다. 199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력기업의 평균적인 부채비율은 343.0%로 미국 166.5%, 일본 212.8%, 대만 87.2%보다 훨씬 높은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22.6%로 미국 37.5%, 일본 32.3%, 대만 53.4%보다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表 Ⅴ-7〉을 참조).

〈表 Ⅴ-6〉 企業의 資産·資本 및 金融費用關係 比率

(單位 : %)

		1990	1991	1992	1993	1994
부채비율	주력업체	330.6	352.9	368.9	336.1	343.0
	30대기업집단	351.0	369.8	384.0	348.4	357.0
	상장기업	273.2	294.7	307.6	288.5	298.3
	제 조 업	286.3	309.2	319.7	294.9	302.5
	대 기 업	274.5	290.6	303.7	273.5	282.9
	중소기업	339.5	415.5	419.6	388.1	394.2
차입금의존도	주력업체	53.0	52.5	55.3	54.3	52.6
	30대기업집단	48.6	49.3	50.2	49.8	48.4
	상장기업	43.3	44.4	45.9	45.3	45.7
	제 조 업	42.8	44.6	47.2	46.8	44.5
	대 기 업	43.2	45.0	47.9	47.7	45.7
	중소기업	41.6	43.1	44.3	43.7	40.3
자기자본비율	주력업체	23.1	22.0	21.3	22.9	22.6
	30대기업집단	22.0	21.3	20.7	22.3	21.9
	상장기업	26.6	25.3	24.5	25.7	25.1
	제 조 업	25.9	24.4	23.8	25.3	24.8
	대 기 업	26.7	25.6	24.8	26.8	26.1
	중소기업	22.8	19.4	19.2	20.5	20.2
유동비율	주력업체	95.1	85.5	80.0	84.6	89.5
	30대기업집단	97.0	92.2	88.8	92.9	94.7
	상장기업	99.8	96.2	94.2	98.2	99.0
	제 조 업	99.4	95.8	92.8	94.1	94.6
	대 기 업	99.4	96.1	93.3	95.0	95.5
	중소기업	99.4	94.5	91.1	92.0	92.0
금융비용대매출액	주력업체	5.8	7.0	8.0	7.4	6.9
	30대기업집단	4.6	5.1	5.6	5.1	5.0
	상장기업	4.8	5.3	5.7	5.3	5.3
	제 조 업	5.1	5.7	6.3	5.9	5.6
	대 기 업	5.4	6.1	6.8	6.5	6.2
	중소기업	4.3	4.4	4.8	4.6	4.3
금융비용대총비용	주력업체	6.3	7.8	8.9	8.3	8.0
	30대기업집단	4.7	5.2	5.6	5.1	5.0
	상장기업	4.9	5.4	5.8	5.4	5.4
	제 조 업	5.1	5.6	6.2	5.8	5.6
	대 기 업	5.3	6.0	6.6	6.4	6.1
	중소기업	4.4	4.4	4.7	4.6	4.3

資料 :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은행감독원.

〈表 Ⅴ-7〉 主力企業과 外國企業의 財務構造 關聯 比率의 推移

(單位 : %)

		1990	1991	1992	1993	1994
부채비율	주력기업	330.6	352.9	368.9	336.1	343.0
	미국	148.7	147.3	168.2	174.5	166.5
	일본	227.1	221.0	216.4	212.8	209.3
	대만	83.4	97.9	93.0	88.0	87.2
자기자본비율	주력기업	23.1	22.0	21.3	22.9	22.6
	미국	40.2	40.4	37.3	36.4	37.5
	일본	30.6	31.2	31.6	32.0	32.3
	대만	54.5	50.5	51.8	53.2	53.4
유동비율	주력기업	95.1	85.5	80.0	84.6	89.5
	미국	139.9	140.9	139.2	140.3	139.4
	일본	131.2	131.3	130.9	133.0	131.8
	대만	123.4	121.7	119.7	117.3	124.9
금융비용/매출액	주력기업	5.8	7.0	8.0	7.4	6.9
	미국	1.9	1.9	1.7	1.8	-
	일본	2.5	2.6	2.3	2.5	1.6
	대만	0.9	1.1	-	-	1.7

資料 :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流動比率 역시 우리나라 주력기업의 경우 89.5%로서 미국 139.4%, 일본 131.8%, 대만 124.9%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이다. 負債依存度가 높음에 따라 주력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도 높아 우리나라 주력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율이 6.9%로 미국 1.8%(1993), 일본 1.6%, 대만 1.7%에 비해 대단히 높은 실정이다.

主力企業의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및 높은 금융비용부담은 主力企業制度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관찰되고 있으며, 主力企業制度가 도입된 1991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主力業種制度가 주력기업들의 財務構造를 악화시킨 유일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금융에의 의존

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재무구조 악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15].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종전문화시책의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오히려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업종전문화시책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나. 收益性 및 成長性

〈表 Ⅴ-8〉을 보면 主力企業의 賣出額營業利益率은 여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1990~1994년 기간중) 賣出額經常利益率은 높은 金融費用으로 말미암아 여타 그룹에 비해 오히려 낮거나(1990~1993년) 크게 높지 않은 편이다(1994년). 1994년을 제외하고 主力企業의 賣出額經常利益率은 30大 企業集團, 上場企業, 大企業(製造業)보다 낮게 실현되었으며, 中小企業보다 낮게 실현된 경우도 있다(1990년, 1991년, 1993년). 主力企業의 總資本經常利益率, 企業經常利益率 및 自己資本純利益率도 매출액경상이익률과 마찬가지로 1994년을 제외하고는 여타 그룹에 비해 낮게 실현되었다.

---

15) 우리나라 기업들의 간접금융 의존도가 높은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의 기업들과는 달리 우리 기업들은 내부자금에 의한 초기자본형성이 보잘 것 없었기 때문에 소요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외부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60·70년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본시장 육성시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채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기업자금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였기 때문에 은행차입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가 전략부문에 대해 실세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의 정책금융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일반대출금리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였으며, 높은 물가상승률이 차입금의 실질금리를 크게 낮춘 것이 은행자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보다는 은행차입의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기업들의 과도한 은행차입을 초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은 安鍾吉(1995)을 참조.

〈表 Ⅴ-8〉 企業의 收益性 比率

(單位 : %)

		1990	1991	1992	1993	1994
매출액영업이익률	주력기업	7.2	8.1	8.9	9.6	12.1
	30대기업집단	5.1	5.5	5.6	5.9	6.6
	상장기업	6.6	6.9	6.8	7.0	7.3
	제 조 업	6.5	6.6	6.6	7.0	7.7
	대 기 업	6.7	7.2	7.4	8.0	8.6
	중소기업	5.9	4.7	4.0	5.0	5.3
매출액경상이익률	주력기업	1.6	0.9	1.1	1.0	4.2
	30대기업집단	1.3	1.1	0.9	1.0	2.1
	상장기업	2.7	2.5	2.2	2.2	2.9
	제 조 업	2.3	1.8	1.5	1.7	2.7
	대 기 업	2.2	1.8	1.8	1.9	3.1
	중소기업	2.6	1.5	0.5	1.3	1.9
총자본경상이익률	주력기업	1.4	0.7	0.8	0.8	3.5
	30대기업집단	1.5	1.2	1.0	1.1	2.3
	상장기업	2.7	2.4	2.1	2.0	2.8
	제 조 업	2.4	1.8	1.4	1.6	2.6
	대 기 업	2.1	1.7	1.6	1.6	2.7
	중소기업	3.6	2.0	0.6	1.6	2.5
기업경상이익률	주력기업	6.7	6.6	7.0	6.6	9.3
	30대기업집단	6.7	6.9	7.1	6.7	7.9
	상장기업	7.4	7.6	7.6	7.1	8.0
	제 조 업	7.8	7.5	7.4	7.1	8.1
	대 기 업	7.3	7.3	7.5	7.1	8.1
	중소기업	9.5	8.1	6.8	7.4	8.1
자기자본순이익률	주력기업	3.5	1.9	1.7	1.1	11.0
	30대기업집단	3.7	3.6	2.3	2.5	7.1
	상장기업	5.8	6.2	4.7	4.2	7.4
	제 조 업	5.5	5.5	3.4	4.2	7.6
	대 기 업	4.7	5.4	4.0	4.1	7.3
	중소기업	9.3	6.2	−0.4	5.0	8.9

資料 :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이와 같은 양상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주력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주요국들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表 Ⅴ-9〉를 참조).

〈表 Ⅴ-9〉 主力企業과 外國企業의 營業 및 經常利益率 推移

(單位 : %)

		1990	1991	1992	1993	1994
매출액 영업 이익률	주 력 기 업	7.2	8.1	8.9	9.6	12.1
	미 국	6.1	5.0	5.2	6.0	7.4
	일 본	4.8	4.2	3.3	2.5	2.9
	대 만	7.0	6.4	5.7	5.0	6.6
매출액 경상 이익률	주 력 기 업	1.6	0.9	1.1	1.0	4.2
	미 국	5.7	3.7	1.3	4.0	7.5
	일 본	4.3	3.4	2.6	1.9	2.4
	대 만	4.5	4.0	3.4	2.9	4.9

資料 :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1994년의 경우 主力企業의 收益性 관련 지표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호전되었는데, 이는 주력기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및 중화학 분야에서 기업의 當期純利益이 급격하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4년의 당기순이익이 9,500억원으로 1993년의 1,600억원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대표적인 주력기업들인 LG반도체, LG전자, LG화학,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전년대비 2~3배의 당기순이익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4년중 30대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이 약 3조원으로 삼성전자 1개사의 당기순이익이 30%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成長性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산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및 매출액증가율 등을 보면 主力企業이 여타 그룹에 비

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表 Ⅴ－10〉을 참조). 특히 유형고정자산증가율의 경우 주력기업과 여타 그룹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主力企業이 이 기간 동안 土地, 建物, 機械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했음을 의미한다.

〈表 Ⅴ－10〉 企業의 成長性 關聯 比率

(單位 : %)

		1990	1991	1992	1993	1994
총자산증가율	주력기업	32.1	32.8	14.1	10.6	20.6
	30대기업집단	29.0	26.1	14.4	12.0	22.1
	상장기업	23.2	21.9	13.9	11.0	14.1
	제 조 업	23.7	22.4	12.0	11.2	16.9
	대 기 업	23.9	23.1	12.6	11.0	16.9
	중소기업	23.1	19.6	9.2	12.0	16.7
유형고정자산증가율	주력기업	28.8	32.0	15.6	15.5	18.6
	30대기업집단	25.8	25.2	14.3	15.6	19.9
	상장기업	17.2	19.8	13.3	12.3	6.1
	제 조 업	18.8	20.3	10.9	13.2	13.2
	대 기 업	17.9	20.4	11.2	13.6	13.5
	중소기업	23.1	19.8	9.0	11.7	11.9
매출액증가율	주력기업	19.8	21.9	16.2	14.5	25.3
	30대기업집단	21.2	24.5	17.0	13.2	21.1
	상장기업	19.8	21.7	14.6	11.2	15.8
	제 조 업	18.6	17.6	10.1	9.9	18.2
	대 기 업	19.6	17.8	11.5	11.2	19.0
	중소기업	16.2	16.8	5.9	7.1	16.5

資料 : 한국신용정보, 「기업재무제표 DB」.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다. 綜 合

主力企業들은 활발한 투자를 통해 外形的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相對的으로 열악한 財務構造와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收益性은 여타 그룹에 비해 좋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주력기업의 기업성장 패턴(높은 성장률, 불건전한 재무구조, 취약한 수익성)은 主力業種制度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관찰되고 있으므로 주력업종제도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력업종제도가 이와 같은 성장패턴을 固着化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主力企業의 財務構造의 不健全性 및 이로 인한 높은 金融費用 負擔은 더욱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주력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經濟構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主力企業의 企業成果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성장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主力企業의 競爭力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과와 직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業種專門化施策의 결과 이들 주력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경쟁력의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업종전문화 시책의 존폐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3. 과도한 多角化의 抑制效果

業種專門化施策의 목적 중의 하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하여금 非關聯多角化를 지양하고 주력업종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업종의 전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다. 업종전문화시책이 비관련다각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택된 政策手段이 비관련다각화를 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의 비중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多角化를 통해 大企業集團이 실현한 이익은 보호된 내수시장으로부터의 高收益, 不動產·言論社 보

유에 따른 부수적 利益 및 金融業 등 요소시장 참여에 따른 안정성과 경쟁우위 등을 들 수 있고, 다각화의 대가로 대기업집단이 지불한 비용으로는 한계기업의 발생 및 전문성 결여에 따른 비효율을 들 수 있다. 현재의 多角化 構造가 형성된 것은 다각화로부터의 이익이 다각화의 비용을 능가했고, 외부차입,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을 통하여 다각화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다각화는 企業生存에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의 결과이며 이러한 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大企業의 多角化는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多角化로부터 창출되는 非正常的인 이득을 줄이고 다각화의 비용을 늘림으로써 다각화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수단의 활용과 外部借入, 系列社 出資, 內部去來 등 다각화를 용이하게 하는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競爭壓力의 增大, 不動産 保有의 收益性 規制, 外部借入方式의 改善, M&A市場의 活性化 등 퇴출장벽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다각화의 유인을 제거·감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銀行與信 및 直接金融에 의해 주력기업의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해주는 현행의 업종전문화시책으로는 원천적으로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다각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다. 이는 계열회사의 수와 영위업종의 수 등 지표상으로 볼 때 業種專門化施策의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다각화 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데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表 Ⅴ－11〉을 참조).

〈表 Ⅴ－11〉 30大 企業集團의 系列會社 및 營爲業種數

(單位 : 個)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열 회 사 수	557	570	590	604	616	623
영 위 업 종 수	11.8	12.1	16.0	18.3	19.1	18.5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4. 綜合的 評價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규제에 대한 완화를 통해 主力企業 및 主力業種에 대해 資金供給을 擴大하여 企業의 競爭力을 強化하고자 하는 政策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1991년 '主力企業制度'의 도입으로 시작된 業種專門化施策의 綜合的인 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業種專門化施策의 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종전문화시책이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나 전문화 및 경쟁력의 개념이 간단한 지표로 數量化하여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生産性, 收益性, 成長性, 市場占有率 등 경쟁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척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종전문화시책 이외의 다른 여러 정책·제도의 복합적인 결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전문화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ⅰ) 資金供給 擴大效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歪曲效果(편중여신, 재무구조의 악화, 경제력집중)가 있거나 (ⅱ) 다른 歪曲效果가 없는 경우에는 資金供給 擴大效果가 미미한 것으로 評價된다. 主力企業에 대해서 與信限度管理 對象에서 除外하는 措置와 出資總額制限 緩和措置로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肯定的 寄與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편중여신완화와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與信管理制度 및 經濟力集中 緩和를 目的으로 하는 出資規制制度의 도입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편 主力企業에 대한 은행법상 同一人 與信限度 例外認定 및 해외증권 발행시 優先權을 부여하는 조치는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을 擴大하는 데 있어서 큰 實效性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業種專門化施策의 窮極的인 目的인 專門化를 통한 競爭力 強化가 단순히 자금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성과를 보더라도 주력기업은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높은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지만 不健全한 財務構造와 높은 금융비용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安全性과 健全性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주력기업의 收益性도 다른 기업에 비해 높지 않게 실현되고 있다. 主力企業의 이와 같은 성장유형은 30대 기업그룹의 평균적인 패턴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成長政策을 추구해 오던 과거 고도성장기의 기업의 성장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Ⅵ. 結論 : 向後 金融支援政策의 方向

1. 偏重與信抑制制度의 必要性

與信限度管理制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偏重與信을 抑制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신한도관리제도 등으로 인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단자·종금·보험·리스 등 與信限度管理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의 경우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1988년 : 32.4%→1995년 : 38.4%)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 중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대출금의 비중은 22~23% 수준에서 안정화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表 Ⅴ-1〉을 참조). 이는 여신한도관리의 대상이 銀行圈에 국한됨에 따라 대기업집단들이 필요한 추가적인 대출자금을 제2금융권에서 조달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 비해 金利自由化가 일찍 이루어진 제2금융권의 貸出金利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리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집단의 대출수요를 1차적으로 은행권에서 충족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수요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고금리를 감수하더라도 여신한도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자금접근이 용이한 제2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與信限度管理라는 제약하에서 대기업집단이 취할 수 있는 최적 행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자금접근이 용이한 것은 여신한도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所有·支配가 확대되어 온 결과 이들 기관들이 대기업집단의 資金調達 창구 역할을 담당하된 데 기인한다. 실제로 1995년 말 현재 30대 계열기업군은 保險會社

18개, 投金 및 綜金社 13개, 證券會社 14개, 其他 55개 등 총 100개의 비은행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다(〈表 Ⅵ－1〉을 참조).

〈表 Ⅵ－1〉 30大 企業集團의 非銀行 金融機關 所有現況 (1995년 말 기준)

기업집단명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금·종금
		생보	손보	
1. 현대	현대증권	(한국생명)	현대해상	현대종금
2. 삼성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세계투금
3. LG	LG증권	(국민생명)	LG화재	LG종금
4. 대우	대우증권	[교보생명]	–	한국종금
5. 선경	선경증권	(중앙생명)	–	인천투금
6. 쌍용	쌍용증권	–	쌍용화재	–
7. 한진	한진증권	–	동양화재	한불종금
8. 기아	–	–	–	아신투금
9. 한화	제일증권	–	제일화재	삼희투금
10. 롯데	–	–	–	–
11. 금호	–	(아주생명)	–	금호종금
12. 두산	–	–	–	–
13. 대림	서울증권	–	–	–
14. 한보	–	–	–	–
15. 동아건설	동아증권	동아생명	–	–
16. 한라	–	–	–	–
17. 효성	–	–	–	–
18. 동국제강	–	–	–	중앙투금
19. 진로	–	–	–	–
20. 코오롱	–	코오롱M	–	–
21. 동양	동양증권	동양생명	–	동양투금
22. 한솔	–	–	–	–
23. 동부	동부증권	동부애트나생명	동부화재	–
24. 고합	–	고합NY	–	–
25. 해태	–	–	–	대한투금
26. 삼미	–	–	–	–
27. 한일	부국증권	–	–	한일투금
28. 극동건설	동서증권	–	–	–
29. 뉴코아	–	–	–	–
30. 벽산	–	–	–	–

〈表 Ⅳ－1〉의 계속

기업집단명	상호신용금고	투자자문	시설대여 등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1. 현대	–	현대투자	현대파이낸스	현대할부	–
2. 삼성	신세계	삼성투자	삼성카드	삼성할부	–
3. LG	부민	LG투자	LG신용카드	LG할부	–
4. 대우	–	대우투자	–	대우할부	대우전자창투
5. 선경	–	선경투자	–	–	–
6. 쌍용	–	쌍용투자	–	쌍용할부	–
7. 한진	–	–	–	–	–
8. 기아	–	–	–	기아포드할부	아신창투
9. 한화	–	제일투자	한화파이낸스 제일팩토링	–	–
10. 롯데	부은	–	부은리스	부은할부	–
11. 금호	–	–	–	금호주택할부	–
12. 두산	–	–	두산렌탈	–	두산창투
13. 대림	대한	–	–	–	–
14. 한보	한보	–	–	–	–
15. 동아건설	–	–	–	동아주택할부	–
16. 한라	–	–	–	–	한라창투
17. 효성	–	–	–	–	–
18. 동국제강	신중앙	–	–	–	–
19. 진로	–	우신투자	–	–	–
20. 코오롱	–	–	–	코오롱할부	–
21. 동양	–	동양투자	동양파이낸스	동양할부	동양창투
22. 한솔	한솔	–	한솔파이낸스	–	한솔창투
23. 동부	동부	–	–	동부주택할부	동부창투
24. 고합	–	–	–	서울할부	–
25. 해태	–	–	–	–	–
26. 삼미	–	–	–	–	–
27. 한일	신라	한일투자	–	–	–
28. 극동건설	극동	동서투자	동서팩토링	동서할부	–
29. 뉴코아	–	–	–	–	–
30. 벽산	벽산	–	–	–	벽산창투

註 : ( ) 안은 간접적인 소유를 의미하며, 다만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대우가 제1대주주가 아님.

특히 이들 기관이 전체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1988년 : 21.7% → 1995년 : 35.1% ; 〈表 Ⅴ－1〉을 참조) 제2금융권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여신비중은 완만하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시사한다. 첫째, 여신한도관리제도가 은행권의 편중여신 억제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금융권 전체의 편중여신 억제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또한 그럴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편중여신 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까지 여신한도관리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했다. 둘째, 여신한도관리제는 금융자율화·국제화가 진전되면서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현 단계에서 제2금융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는 금융자율화의 진행정도, 금융관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은행권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제의 폐지는 은행권에서의 편중여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與信限度管理規制의 緩和를 위해서는 (ⅰ) 金利自由化·資本自由化를 통한 자금의 초과수요현상 해소 (ⅱ) 偏重與信抑制를 위한 制度整備 (ⅲ) 中小企業金融支援制度의 擴充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ⅰ) 金利自由化·資本自由化를 통한 資金의 초과수요현상 해소

金利自由化가 완성되면 與信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資本自由化는 어느 기업이나 信用度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달가능하게 되어 여신관리를 통한 자금배분기능이 불필요하게 된다. 현재 3단계 金利自由化가 완료되었지만 銀行의 金利決定이 완전히 自律的으로 客觀的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통화당국이 여전히 暗默的으로 金利決定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은행들 역시 貸出審査機能을 제대로 행사하기보다는 여전히 기업의 외형적 규모에 의존

하여 貸出與否 및 貸出條件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實質的인 金利自由化는 은행이 自律的으로 기업의 財務構造, 成長性 및 收益性 등에 기초하여 與信審査가 이루어질 때 완성될 수 있다. 최근에는 여유자금이 있어도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은행의 貸出審査機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資本自由化 역시 持續的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내외에서의 直接金融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金融市場에서 자금의 超過需要 및 信用割當現象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금리자유화 및 자본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시장 전반에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이 편중여신억제 정책의 폐지를 위한 우선적 전제조건인 것이다.

(ii) 偏重與信緩和를 위한 制度整備

大企業에 대한 偏重與信은 金融機關의 貸出決定이 기업의 外形的 規模 및 相互債務保證에 의존하는 관행이 지속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大企業에 대한 偏重與信이 緩和되기 위해서는 (i) 편중여신의 構造的 원인 중의 하나인 상호채무보증이 더욱 축소되어야 하고 (ii)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이 확충되어 기업의 信用度, 事業性 및 收益性 등에 의하여 與信運用이 이루어져야 한다.

金融機關의 貸出審査能力이 부실하고 금리가 규제되어 대출시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호채무보증은 부동산 담보나 계열사 채무보증을 반드시 요구했던 금융기관의 영업행태와 손쉬운 채무보증을 통하여 여신을 공급받고자 했던 대기업집단의 행태가 相互作用한 결과로 보편화된 금융관행으로 외국에는 그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1992년 3월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債務保證은 169조원으로 30대 總與信額의 2배, 自己資本의 5.4배에 달하였다. 이처럼 상호채무보증의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1993년부터 재벌의 모든 계열사에게 自己資本의

200%라는 채무보증 한도액이 적용되고 3년의 경과기간 내에 한도초과분을 해소하도록 규정하는 相互債務保證 規制制度가 도입된 바 있다. 그 결과 1995년 4월 1일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은 自己資本對比 16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總與信 대비 채무보증의 비율은 233.9%로서 오히려 상승하여 대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공급과정에서 채무보증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Ⅵ－2〉를 참조). 相互債務保證이 偏重與信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偏重與信을 지탱하여 온 잘못된 관행으로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16].

〈表 Ⅵ－2〉 30大 企業集團의 債務保證現況

(單位 : 조원)

	채무보증금액			자기자본(C)	여신 (D)[2]	A/C (%)	B/C (%)	B/D (%)
	제한(A)	제한제외[1]	계(B)					
1992. 3월말	－	－	169.0	31.4	83.9	－	538.2	201.4
1993. 4. 1	120.6	44.9	165.5	35.2	99.7	342.6	470.2	166.0
1994. 4. 1	72.5	38.2	110.7	42.8	46.2	169.3	258.1	239.6
1995. 4. 1	48.3	33.8	82.1	50.7	35.1	95.2	161.9	233.9

註 : 1) 채무보증제한의 예외대상은 산업합리화 여신, 해외지점 여신, 수출입은행 제작금융, 해외건설 비차입성 여신, 기술개발자금, D/A, D/P, Local L/C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등임(공정거래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17조의 3).

2) 여신＝대출＋지급보증. 1992년과 1993년의 여신 통계는 제1, 2금융권을 합한 수치이며 1994년 이후는 제1금융권에 국한.

資料 : 공정거래위원회.

16)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채무보증 규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반대에는 (ⅰ) 채무보증제한이 기업의 자유의사를 불합리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부당하며, (ⅱ) 상호채무보증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재벌만의 책임은 아닌 만큼 금융산업의 개혁없이 재벌만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이 기본 논리로 깔려 있다. 한편 이원흠(1993)은 상호지급보증 제도가 기업재무적 측면에서 모든 참여자에게 득이 되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승민(1996)은 편중여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자금 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이유로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한편 金融機關의 貸出審査機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심사기법의 개발 등을 통해 심사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기업회계정보가 金融市場에 공개될 수 있도록 부실외부감사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신뢰할 만한 신용정보교환시스템 및 신용정보관리기구의 육성을 통해 信用情報의 調査·分析 交換을 촉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iii) 中小企業金融支援制度의 擴充

偏重與信의 핵심은 交涉力 및 信用度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합리적 배분문제이다. 따라서 금융의 自律化·開放化의 진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金融自律化와 부합하는 중소기업금융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은 偏重與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다.

自律化時代의 中小企業金融의 핵심적인 과제는 (i) 信用貸出의 活性化 (ii) 외상매출채권의 現金化率 제고 (iii) 중소형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業務活性化 등 中小企業金融의 근본적인 문제들(脆弱한 擔保力 및 交涉力, 정보의 非對稱性, 높은 去來費用)을 극복하는 것이다. 信用貸出을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 信用保證制度를 擴充·整備하고 신

채무보증에 따라 계열사간 재무연계가 심화되면 계열사 중 한계기업이 발생하더라도 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계기업이 도산할 경우 우량기업까지 연쇄도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 채무보증의 진정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채무보증이 중요한 퇴출장벽이라는 것이다. 또한 채무보증은 재벌의 소유집중,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내부거래 등과 함께 그룹집중식 경영구조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계열사의 독립경영체제가 도입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용대출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법률적·관행상의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17]. 외상매출채권의 現金化率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短期的으로 商業어음割引이 보다 活性化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中·長期的으로는 信用情報機能의 擴充을 통해 中小企業에 대한 信用評價機能을 補完해야 한다[18]. 相互信用金庫, 信用協同組合, 새마을金庫 등 상호금융형·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적극 육성하여 規模·階層別로 거래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19].

이상과 같은 先決課題를 해결함으로써 偏重與信 緩和를 위한 與信管理制度의 완화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여신한도관리를 통한 偏重與信 緩和政策의 필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主力企業에 대한 여신한도관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여신한도관리의 實效性을 沮害하고, 主力企業의 財務構造를 악화하여 오히려 기업의 長期的인 競爭力을 약화시키는 측면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出資總額制限制度의 實效性 提高

현 시점에서 볼 때도 아직 30대 기업집단의 他會社出資, 財務構造, 所有集中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主力企業의 경우에는 이러한 指標로 볼 때 더욱 劣惡한 상태에 있다. 출자총액제한은 평균 43.3%에 이르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중 소유·지배권 집중의 근원인 계열사지분율(32.8%)을 하락시키도록 작용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즉 출자총액제한에 직면한 대기업집단들은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기

17) 자세한 내용은 정건용(1994)을 참조.
18) 자세한 내용은 李基榮(1996)을 참조.
19)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박정수·이기영(1995)을 참조.

위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든지 기존의 출자분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계열사 지분율을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系列社間 相互所有構造는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으로부터의 退出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며, 계열기업들로 하여금 經營革新이나 技術開發보다는 獨寡占價格 維持, 非價格競爭, 生産要素 獨占, 內部去來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데 안주하도록 함으로써 業種專門化를 통한 體質改善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消費者의 기호가 날로 다양화함에 따라 제품의 壽命週期가 단축되고 기술개발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상황에서 수익 흐름의 安定性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화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와 같은 過度한 相互出資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競爭力 강화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이를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出資總額制限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업종별 進入·所有·投資規制, 업종전문화제도 등 미시적인 다변화규제와는 달리 업종무차별적 총량규제라는 점에서 市場歪曲效果가 비교적 작고, 고성장에 따라 자본이 확대되는 대기업집단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는 유지·강화되어야 한다[20]. 결국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는 오히려 이들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예외를 최소화하여 과도기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즉,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상의 예외인정조치도 재고되어야 한다.

---

20) 유승민(1996)은 정부가 출자총액을 제한하여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아직도 재벌의 과도한 출자를 유혹하는 다각화 유인이 우리 경제에 충만하다는 점이며, 둘째는 정부가 재벌의 실패에 대한 보험자 역할을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同一人 與信限度의 例外認定措置의 最小化

정부는 大企業들에 대한 與信管理를 段階的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 결과 발생할지도 모를 편중여신에 따른 銀行의 健全性 惡化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94년도 은행법 개정에서 은행의 同一人 與信限度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巨額與信에 대해서는 총액한도(銀行自己資本의 一定 倍數)를 설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大規模 企業集團에 대한 與信管理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同一人 與信限度 대출은 自己資本의 20%에서 15%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는 自己資本의 40%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은 金融自律化의 확대로 銀行의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면서 銀行 經營者의 방만한 資產運用이 銀行의 건전성 저하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이후 銀行들이 內部留保 擴大, 增資 등을 통해 自己資本을 확충해 온 결과 일반은행의 自己資本은 최근 2년 동안 20.2%(시중은행은 23.1%)나 증가하였다(안종길(1995)). 따라서 동일인 與信限度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大企業들에 대한 與信可能 規模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大企業에 대한 편중여신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同一人 與信限度를 축소하고 여신한도 초과분은 법 施行日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限度超過 與信의 은행감독원장 承認範圍도 대출은 自己資本의 50%에서 30%로, 지급보증은 自己資本의 100%에서 60%로 각각 縮小하였다.

主要國의 銀行들이 金融自律化 과정에서 심화되는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각자의 比較優位를 고려하여 特定 部門에 專門化하거나 合併·業務多角化를 통해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顧客確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銀行들, 특히 市中銀行들이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大企業 爲主의 수동적인 경영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

는 것이 중요하다. 同一人 與信限度의 축소는 金融機關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가 추구해야 할 長期發展戰略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유도하는 조치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안종길(1995)).

동일인 여신한도의 축소와 더불어 당국은 同一 系列企業群別 與信限度 規制의 보완장치로 동일인 同一 系列企業群에 대한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5%를 초과하는 巨額與信의 總額限度를 설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1994년 12월 신설하였다. 동일인 여신한도제가 개인 또는 개별업체 단위로 관리되므로 특정업체에 대한 과다여신만 억제하고, 與信限度管理制는 금융면에서의 경제력집중 억제에 치중하고 있어서 여신위험 분산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의해 巨額與信 總額限度制가 도입된 것이다. 은행들의 自己資本 증가추세와 현재의 거액여신 규모, 외국사례 등을 고려할 때, 同 制度의 도입은 또 다른 형태의 규제수단이라기보다는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와 함께 향후의 與信集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결국 同一人 與信限度制와 은행별 巨額與信 총액한도제는 金融自律化의 진전과 함께 결국 대기업에 대한 與信管理를 완화하는 대신 偏重與信에 따른 은행의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핵심적 규제 수단으로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與信規制는 금융자율화가 이미 성숙단계에 와 있는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제규범에도 부합된다[21].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들 제도는 예외의 인정을 최소화

---

21) 美國에서는 특정한 借入者에 대한 대출이 은행자기자본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州에서는 擔保가 있는 경우의 대출한도를 自己資本의 25~35%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에는 은행법 제13조와 대장성 政令 제4조에 의거하여 동일인에 대한 信用供與는 廣義의 自己資本(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잉여금 충당금 중 大藏相이 정하는 것의 합계)의 20%를 초과하는 여신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獨逸에서는 與信總額이 金融機關 책임자기자본액의 15%를 초과하는 동일인에 대한 巨額與信은 지체없이 독일 연방은행에 보고

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支援의 實效性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된 主力企業에 대한 예외 인정조치도 이러한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綜 合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기본적으로 銀行與信 및 直接金融에 의해서 主力企業의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業種專門化와 競爭力 強化를 도모하지만 몇몇 주력기업에 대해 資金供給을 擴大함으로써 業種專門化와 競爭力 強化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競爭力이란 기업노력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실현되는 것이지 단순히 資金供給의 擴大로 競爭力 強化를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競爭을 통한 專門化를 유도하는 기능이 경제전반에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에 主力企業에 대한 資金供給의 擴大로 業種專門化가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主力企業에 대한 與信規制의 緩和는 오히려 借入依存度와 金融費用을 上昇시켜 競爭力을 弱化시킬 수도 있음이 판명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업종전문화시책의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業種專門化施策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銀行與信 및 直接金融에 의해 주력기업의 資金調達을 유리하게 해 주는 현행의 업종전문화 시책으로는 원천적으로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多角化를 억제할 수가 없다. 이는 業種專門化施策의 시행 이후에도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다각화 행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데에서도 입증이 되었다. 결국 경쟁력강화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다각화를 억제하기 위해

하여야 하며, 개별 거액여신은 金融機關 責任自己資本의 7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독일·프랑스의 경우 自己資本의 15%(EU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巨額與信의 총합계액이 自己資本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입된 업종전문화 시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판명된 것이다.

또한 中·長期的으로 볼 때 與信管理制度 및 出資總額制限制度는 모두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지만, 과도기 상태인 현재의 단계에서 볼 때 여신한도관리와 출자총액제한의 필요성은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제도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제도의 예외인정을 통해 業種專門化를 추진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主力企業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상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와 해외증권 발행시 우대하는 조치는 모두 지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현행의 業種專門化施策은 편중여신 및 소유·지배권 집중의 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하여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왜곡효과가 적은 수단인 경우에는 지원의 실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業種專門化施策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강신일, 『大規模企業集團에 관한 硏究』, 韓國經濟硏究院, 1991.

공병호, 『政府主導型 業種專門化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韓國經濟硏究院, 1991. 4.

國會 企業專門化硏究會, 『企業專門化(Ⅰ)』, 1995. 2.

김 견, 「大企業集團 業種專門化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懸案分析』, 第78號, 1994. 6.

김영욱, 「三星의 多角化過程과 支配構造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經濟學 博士學位論文, 1993.

남상구·이영기, 「韓國企業金融의 特質과 發展課題」, 韓國金融學會 第1次 特別 심포지엄 發表論文, 1994. 11. 25.

박정수·이기영, 『地方化時代의 財政·金融政策方向』, 韓國租稅硏究院, 1995. 12.

産業硏究院, 『業種專門化政策의 評價와 發展方向』, 政策硏究資料, 1995. 12.

서울大 經營硏究所, 『産業競爭力 強化를 위한 政府의 對財閥政策』, 1993.

선우석호·양원근, 『大企業集團 業種專門化 誘導方案』, 産業硏究院, 1990. 6.

소일섭, 『經濟力集中 抑制施策과 企業支配構造 改善方案』, 韓國經濟硏究院, 1996. 1.

안종길, 『金融環境變化와 銀行·企業間關係의 發展方向』, 韓國租稅硏究院, 1995. 5.

양원근, 『大企業集團의 效率性 分析』, 産業硏究院, 1992. 4.

유승민, 「出資限度 25%의 論理와 當爲」, 『信用經濟』, 1994. 10.

———, 「財閥의 業種專門化와 政府의 役割」, 未發表 論文, 1993. 8.

———, 『나누면서 커간다 : 財閥政策』, 미래미디어, 1996. 2.

유승민 · 김준경, 『與信管理制度의 改編方案』, 韓國開發研究院, 1992. 11.

이기영, 『企業間信用과 生産者 流通金融의 現況 및 政策課題』, 韓國租稅研究院, 1996. 5.

정건용,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方案 :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韓國租稅研究院, 1994. 9.

정구현, 『韓國企業의 多角化戰略과 國際競爭力』, 韓國經濟研究院, 1991.

정병휴 · 양영식, 『韓國 財閥部門의 經濟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92. 7.

조동성, 『韓國財閥研究』, 每日經濟新聞社, 1990.

通商産業部, 『通商産業白書』, 1995.

韓國銀行 與信管理局, 「與信管理制度의 現況 및 向後 推進課題」, 報道資料, 1995. 6.

Lecraw, D.J.,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1984. 12.

Montgomery, C.A., "Corporate Diversific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1994.

〈附錄 1〉 主力企業과 所屬企業集團의 資産·資本比率 推移

〈1990년〉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4.95	76.08	564.92	70.18
현대자동차(주)*	18.08	85.43	452.98	47.38
현대	20.14	84.79	394.12	43.98
삼성전자(주)*	20.08	96.39	397.31	54.50
삼성중공업(주)*	15.52	64.23	544.19	40.50
삼성종합화학(주)*	17.41	14.31	474.29	63.66
삼성	21.77	79.88	358.52	49.95
대우자동차(주)*	12.40	70.49	702.69	55.93
대우	24.61	108.14	305.77	48.83
LG반도체(주)*	9.16	59.98	991.93	75.34
LG전자(주)*	22.49	100.00	343.00	53.26
(주)LG화학	36.20	102.31	176.23	40.71
LG	24.51	97.98	307.14	46.36
(주)유공	20.08	120.26	395.46	64.71
(주)선경인더스트리*	19.51	83.18	410.69	64.33
SKC*	10.19	61.33	881.31	
선경	19.96	104.44	398.87	56.93
(주)대한항공	13.44	61.10	616.89	61.04
한진	7.74	70.96	1163.13	58.71
쌍용정유(주)	34.92	99.38	186.41	33.69
쌍용양회공업(주)	36.93	109.14	170.79	34.12
쌍용자동차(주)*	26.16	117.08	282.22	44.67
쌍용	28.02	110.22	255.82	42.63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4.78	106.50	303.49	39.31
(주)기아기공*	10.11	131.45	879.90	55.51
기아특수강(주)*	17.98	142.24	446.75	63.20
기아	25.28	102.97	293.57	43.05
한화에너지*	18.43	92.69	442.60	52.58
한화종합화학(주)	34.83	117.09	186.97	44.26
(주)한화	35.93	84.09	178.28	44.16
한화	23.84	86.12	319.28	43.89
롯데제과(주)*	18.09	54.11	452.72	25.93
호남석유화학(주)	49.08	154.38	103.75	32.50
롯데	40.25	84.18	148.43	29.28
(주)금호*	24.42	66.31	308.76	61.02
금호석유화학(주)	56.01	68.93	78.55	33.22
(주)아시아나항공*	−4.04	29.81	−2572.39	92.95
금호	28.77	93.68	247.21	55.42
대림요업(주)	41.87	78.16	138.55	37.37
대림콘크리트공업(주)	36.82	122.43	171.48	19.21
대림	19.32	138.33	414.30	53.52

〈附錄 1〉의 계속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17.52	60.40	470.75	39.70
두산	20.11	103.06	396.72	47.94
동아건설산업(주)	20.00	166.66	393.93	52.87
대한통운(주)	28.48	118.66	222.82	39.69
동아건설	9.95	159.52	883.14	51.03
(주)한일합섬	28.21	193.28	254.43	60.25
경남모직(주)	32.54	151.04	207.32	55.57
한일	14.79	158.85	575.52	68.20
동양나이론(주)	27.61	90.66	260.45	53.87
효성중공업(주)*	13.80	110.19	624.73	54.89
효성	23.71	110.60	320.06	55.39
동국제강(주)	51.17	93.00	95.42	24.34
한국철강(주)	45.35	148.92	120.27	26.34
동국제강	34.88	126.14	186.47	39.34
삼미종합특수강(주)	34.91	151.19	186.44	54.25
삼미	30.60	119.55	226.70	55.90
만도기계(주)	32.06	126.66	211.23	42.72
한라중공업(주)*	−53.50	36.45	−286.20	115.74
한라	17.37	65.18	474.30	61.09
(주)코오롱	27.37	117.38	261.94	55.05
코오롱유화(주)	48.87	143.43	104.35	28.82
코오롱	26.75	127.47	271.99	42.44
(주)진로	22.55	81.11	343.42	45.67
진로	10.37	77.43	862.28	60.56
동부제강	23.64	176.95	322.96	37.41
동부	25.57	125.88	291.02	41.79
고려합섬(주)	23.10	39.66	332.81	68.77
고려종합화학(주)*	12.23	20.47	717.41	83.50
고려석유화학(주)*	10.64	38.44	839.56	77.44
고합	19.87	45.65	403.24	70.90
극동건설(주)	28.13	225.30	255.47	44.20
극동요업(주)	38.52	138.20	159.60	37.02
극동건설	20.77	187.40	252.25	28.92
(주)우성건설	18.72	139.53	434.24	44.21
우성건설	16.73	134.57	497.50	48.58
(주)벽산	32.54	104.95	207.36	41.74
벽산건설(주)	21.45	131.10	366.18	50.28
벽산	19.45	120.69	412.97	44.13
(주)삼양사	30.84	116.77	223.12	41.48
삼남석유화학(주)	10.97	78.64	811.83	64.62
삼양	−	−	−	−

〈附錄 1〉의 계속

〈1991년〉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1.20	69.40	790.83	67.20
현대자동차(주)*	16.23	97.39	516.00	51.28
현대	18.57	86.20	437.27	46.21
삼성전자(주)*	17.97	74.80	456.30	53.99
삼성중공업(주)*	14.93	55.96	569.72	41.83
삼성종합화학(주)*	18.92	31.68	428.52	71.11
삼성	22.51	72.53	343.95	49.54
대우자동차(주)*	4.07	58.95	2351.38	61.66
대우	21.48	104.40	365.26	51.97
LG전자(주)*	21.27	86.57	369.39	56.86
LG반도체(주)*	9.58	44.31	943.47	76.97
(주)LG화학	29.29	86.98	241.36	51.73
LG	22.45	92.88	345.08	51.24
(주)유공	32.35	95.06	208.72	51.84
(주)선경인더스트리*	17.41	91.90	473.70	65.23
SKC*	11.00	65.30	808.70	–
선경	25.22	91.25	295.87	52.45
(주)대한항공	11.15	59.12	781.99	39.08
한진	6.20	72.45	1495.28	46.11
쌍용정유(주)	42.72	117.61	134.07	29.81
쌍용양회공업(주)	32.73	96.24	205.54	36.60
쌍용자동차(주)*	29.82	128.97	235.39	46.50
쌍용	30.51	117.32	226.46	41.23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1.32	91.03	369.13	49.96
(주)기아기공*	16.60	115.15	500.91	51.35
기아특수강(주)*	19.98	121.03	398.47	61.54
기아	22.90	106.69	335.93	44.42
한화에너지*	17.70	66.28	464.98	49.88
한화종합화학(주)	30.39	107.00	228.97	54.70
(주)한화	32.35	90.32	209.09	54.14
한화	21.39	76.80	367.39	51.99
롯데제과(주)*	15.55	58.46	542.91	37.04
호남석유화학(주)*	35.68	72.26	180.28	47.48
롯데	36.54	84.95	173.60	31.59
(주)금호*	19.23	60.12	419.51	66.47
금호석유화학(주)	53.34	75.12	87.48	37.86
(주)아시아나항공*	4.47	42.13	2138.58	67.21
금호	25.58	85.67	290.73	56.47
대림요업(주)	32.15	69.14	210.95	46.32
대림콘크리트공업(주)	55.02	140.33	81.74	17.47
대림	17.35	137.60	473.63	53.59

〈附錄 1〉의 계속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37.78	45.27	164.70	27.49
두산	24.96	91.37	300.48	45.30
동아건설산업(주)	17.03	147.70	472.72	45.89
대한통운(주)	24.02	115.09	312.38	37.74
동아건설	9.49	144.94	933.53	45.40
(주)한일합섬	21.71	188.26	360.55	65.77
경남모직(주)	28.97	105.31	245.19	62.40
한일	15.22	138.31	556.82	68.18
동양나이론(주)	25.58	86.73	290.19	58.44
효성중공업(주)	13.05	112.70	666.31	53.09
효성	22.93	109.80	335.40	54.25
동국제강(주)	43.12	109.13	131.92	33.17
한국철강(주)	35.33	129.61	182.96	31.34
동국제강	29.50	121.44	238.85	42.53
삼미종합특수강(주)	27.11	136.53	268.85	61.50
삼미	23.22	104.41	330.52	58.46
만도기계(주)	25.42	93.96	293.14	50.00
한라중공업(주)*	−30.51	42.39	−427.52	100.39
한라	13.26	58.89	653.25	63.32
(주)코오롱	26.80	95.41	273.19	56.93
코오롱유화(주)	41.86	126.13	138.80	36.57
코오롱	26.47	121.28	277.64	44.32
(주)진로	23.84	113.78	319.50	51.80
진로	7.88	75.82	1167.39	70.17
동부제강	27.45	161.96	264.32	37.09
동부	24.73	111.46	304.20	41.81
고려합섬(주)	18.63	61.13	436.77	70.00
고려종합화학(주)*	12.69	8.18	687.93	79.13
고려석유화학(주)*	13.73	38.94	628.41	82.54
고합	17.66	54.74	466.19	70.25
극동건설(주)	27.21	200.06	267.52	38.41
극동요업(주)	29.96	103.16	233.74	39.58
극동건설	20.36	179.43	274.36	28.94
우성건설*	13.78	121.80	625.42	47.89
우성건설	15.11	123.73	561.40	48.54
(주)벽산	30.85	95.19	224.15	41.27
벽산건설(주)*	13.09	124.10	663.53	62.13
벽산	15.23	118.31	554.66	49.81
(주)삼양사	31.73	118.55	214.63	37.50
삼남석유화학(주)	17.07	70.45	485.73	52.99
삼양	—	—	—	—

〈附錄 1〉의 계속

〈1992년〉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0.11	61.08	888.77	72.15
현대자동차(주)	17.75	88.97	463.54	43.38
현대	19.29	83.75	418.23	45.45
삼성전자(주)*	18.53	71.59	439.72	59.29
삼성중공업(주)*	16.87	64.88	492.94	50.25
삼성종합화학(주)*	18.78	29.29	432.56	65.44
삼성	22.65	73.44	341.37	50.87
대우자동차(주)*	0.12	56.71	84957.14	69.72
대우	19.75	98.67	406.14	49.15
LG전자(주)	23.95	85.99	317.54	53.05
LG반도체(주)*	19.98	62.44	400.42	65.52
(주)LG화학	28.84	68.81	246.78	53.85
LG	22.37	89.18	346.82	49.10
(주)유공	29.66	90.29	237.17	56.77
(주)선경인더스트리	35.36	99.41	182.83	51.44
SKC*	11.20	65.80	790.00	–
선경	26.10	95.84	283.03	53.44
(주)대한항공	11.34	53.82	778.96	37.89
한진	8.17	70.77	1120.38	44.89
쌍용정유(주)	40.99	113.55	143.97	33.27
쌍용양회공업(주)	32.47	90.61	208.02	42.06
쌍용자동차(주)*	27.40	108.47	264.91	57.08
쌍용	29.52	115.80	237.53	45.61
아시아자동차공업(주)	19.85	102.66	403.67	56.78
(주)기아기공	12.96	116.12	671.57	56.02
기아특수강(주)	20.59	83.98	385.72	66.30
기아	20.58	95.25	385.83	49.45
한화에너지*	11.71	61.10	754.10	58.53
한화종합화학(주)	26.33	78.28	279.84	59.36
(주)한화	28.69	83.00	248.53	56.41
한화	18.00	67.61	455.35	56.84
롯데제과(주)*	16.21	58.54	516.85	37.04
호남석유화학(주)*	32.91	76.03	203.89	52.67
롯데	36.05	88.36	177.32	32.26
(주)금호*	19.36	60.22	416.56	64.13
금호석유화학(주)	58.10	93.24	72.12	33.55
(주)아시아나항공*	4.20	41.67	2281.61	54.04
금호	23.00	85.39	334.60	55.46
대림요업(주)	32.88	70.76	204.11	45.26
대림콘크리트공업(주)	45.98	105.19	117.51	34.69
대림	17.57	128.98	467.20	56.25

〈附錄 1〉의 계속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32.64	52.06	206.37	37.67
두산	22.07	89.43	353.04	52.69
동아건설산업(주)	17.92	139.98	454.03	50.17
대한통운(주)	24.71	72.30	303.81	42.95
동아건설	10.75	133.92	824.51	49.57
(주)한일합섬	14.14	101.83	607.45	71.25
경남모직(주)	27.30	105.21	266.36	64.76
한일	9.58	100.22	943.64	72.68
동양나이론(주)	25.16	81.95	297.46	60.28
효성중공업(주)	13.89	111.74	619.79	51.58
효성	23.34	102.63	328.31	55.90
동국제강(주)	38.32	90.96	160.95	39.87
한국철강(주)	30.68	95.30	225.99	45.14
동국제강	26.92	101.35	271.43	47.40
삼미종합특수강(주)*	20.03	89.77	399.15	67.70
삼미	23.22	104.41	330.52	58.46
만도기계(주)	26.98	73.90	270.71	44.62
한라중공업(주)*	−37.96	42.22	−412.94	114.67
한라	10.44	55.97	857.60	65.64
(주)코오롱	26.00	96.77	284.66	57.39
코오롱유화(주)	37.69	121.94	165.32	38.19
코오롱	25.85	119.03	286.80	44.78
(주)진로	17.88	99.99	459.34	63.72
진로	6.47	79.12	1444.71	71.52
동부제강	25.58	112.90	290.98	38.65
동부	23.74	113.86	321.15	42.74
고려합섬(주)	17.03	45.82	487.16	72.38
고려종합화학(주)*	8.33	10.71	1100.88	84.83
고려석유화학(주)*	10.11	48.30	889.53	82.88
고합	15.70	49.55	536.56	71.54
극동건설(주)	23.12	172.59	332.57	43.96
극동요업(주)	30.08	82.04	232.47	7.58
극동건설	18.61	160.62	331.55	32.70
(주)우성건설	12.97	129.52	671.26	50.36
우성건설	11.03	116.11	806.53	55.08
(주)벽산	33.76	104.23	196.22	38.72
벽산건설(주)*	14.30	123.09	598.54	62.00
벽산	16.63	116.07	500.94	50.04
(주)삼양사	30.52	140.46	227.38	43.43
삼남석유화학(주)	28.45	94.60	251.47	44.38
삼양	—	—	—	—

〈附錄 1〉의 계속

〈1993년〉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4.76	69.13	577.49	62.89
현대자동차(주)*	22.65	97.38	341.52	37.25
현대	22.78	86.82	338.83	43.44
삼성전자(주)*	24.42	93.85	309.45	49.02
삼성중공업(주)*	24.91	72.95	301.40	41.99
삼성종합화학(주)*	12.44	35.98	704.14	81.99
삼성	24.98	86.80	300.19	47.89
대우자동차(주)*	14.60	83.41	584.86	67.63
대우	22.78	110.63	338.93	52.11
LG전자(주)	34.30	89.62	191.51	43.99
LG반도체(주)*	25.19	84.27	296.97	54.94
(주)LG화학	31.01	76.92	222.50	53.39
LG	26.64	95.67	275.26	47.14
(주)유공	29.85	86.45	234.98	57.48
(주)선경인더스트리	36.16	90.01	176.53	51.55
SKC	11.30	58.00	787.60	–
선경	25.97	95.11	285.05	52.49
(주)대한항공*	10.39	53.16	862.90	36.30
한진	10.60	72.66	843.11	40.68
쌍용정유(주)	42.94	128.57	132.90	34.99
쌍용양회공업(주)*	34.88	75.70	186.67	41.26
쌍용자동차(주)	18.35	76.13	445.09	58.99
쌍용	29.38	110.80	240.25	47.06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0.72	93.28	382.51	57.92
(주)기아기공	11.70	112.54	754.92	56.76
기아특수강(주)	19.31	80.16	417.83	67.68
기아	19.16	90.65	421.79	53.95
한화에너지	11.25	70.85	789.27	64.08
한화종합화학(주)	26.23	83.40	281.30	62.34
(주)한화*	27.83	64.79	259.38	60.80
한화	18.13	67.49	451.29	59.54
롯데제과(주)	16.23	56.19	516.02	30.99
호남석유화학(주)	26.56	60.01	276.47	59.84
롯데	36.99	89.34	170.28	30.75
(주)금호*	17.95	66.72	457.14	66.23
금호석유화학(주)	62.20	103.94	60.77	28.44
(주)아시아나항공*	0.40	30.22	25113.35	50.90
금호	20.42	84.18	389.54	56.30
대림요업(주)	32.92	66.16	203.79	44.65
대림콘크리트공업(주)	40.50	99.86	146.91	44.28
대림	16.91	133.75	491.29	58.19

〈附錄 1〉의 계속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30.10	50.88	232.17	41.76
두산	19.83	91.69	404.08	54.65
동아건설산업(주)	22.08	140.95	352.85	57.17
대한통운(주)	32.36	86.24	209.04	32.21
동아건설	16.15	137.30	519.04	53.45
(주)한일합섬*	7.75	104.14	1190.32	79.42
경남모직(주)	36.89	174.24	171.07	53.39
한일	10.16	99.43	883.32	71.31
동양나이론(주)*	25.38	83.97	293.94	61.90
효성중공업(주)	39.86	104.85	150.87	39.67
효성	28.53	105.45	250.40	54.64
동국제강(주)	40.11	70.32	149.31	38.45
한국철강(주)*	27.85	91.86	259.06	39.17
동국제강	28.91	101.92	245.81	43.28
삼미종합특수강(주)	12.01	87.50	732.91	69.92
삼미	8.33	73.08	1099.50	71.70
만도기계(주)	22.75	54.82	339.64	49.00
한라중공업(주)*	−37.18	40.15	−368.94	100.09
한라	6.15	55.39	1525.78	66.31
(주)코오롱	30.00	98.39	233.33	49.81
코오롱유화(주)	35.80	135.74	179.33	41.79
코오롱	28.31	120.64	253.20	42.08
(주)진로	20.34	101.93	391.60	59.69
진로	4.24	84.89	2257.23	67.73
동부제강	30.11	155.46	232.09	35.95
동부	28.27	113.28	253.63	39.60
고려합섬(주)	14.65	32.22	582.48	74.73
고려종합화학(주)*	3.67	10.70	2623.65	93.26
고려석유화학(주)*	12.27	33.66	715.00	76.26
고합	14.32	38.03	598.08	72.66
극동건설(주)	21.45	158.32	366.25	49.74
극동요업(주)	47.82	155.00	109.13	10.99
극동건설	20.25	146.10	353.86	44.44
(주)우성건설	14.09	171.09	609.70	60.21
우성건설	10.80	138.19	825.41	63.71
(주)벽산	31.18	105.42	220.67	49.09
벽산건설(주)	13.06	115.83	665.66	66.15
벽산	16.04	112.57	523.32	55.21
(주)삼양사	26.80	130.51	273.16	50.50
삼남석유화학(주)	36.15	110.28	176.65	36.70
삼양	—	—	—	—

〈附錄 1〉의 계속

〈1994년〉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대전자산업(주)*	13.74	90.00	627.94	53.02
현대자동차(주)	22.94	101.16	335.83	29.72
현대	20.64	91.05	384.33	44.25
삼성전자(주)	31.50	117.22	217.41	40.41
삼성중공업(주)*	23.63	70.42	323.13	44.31
삼성종합화학(주)*	17.67	42.05	466.04	76.53
삼성	28.11	92.42	255.70	42.85
대우자동차(주)*	13.69	98.90	630.36	65.11
대우	24.93	120.02	300.98	48.27
LG전자(주)	28.23	79.09	254.21	45.97
LG반도체(주)	33.86	133.33	195.31	44.53
(주)LG화학	31.13	83.40	221.27	52.23
LG	25.72	98.41	288.66	44.54
(주)유공	26.66	85.90	275.10	60.01
(주)선경인더스트리	33.79	81.97	195.95	52.13
SKC*	12.10	52.60	723.40	-
선경	23.31	92.46	328.98	51.24
(주)대한항공*	12.51	59.09	699.56	32.45
한진	12.75	77.76	683.76	35.91
쌍용정유(주)	38.27	94.77	161.31	36.45
쌍용양회공업(주)	31.06	56.54	221.91	45.52
쌍용자동차(주)*	9.41	95.31	962.36	73.09
쌍용	24.17	99.28	313.58	51.36
아시아자동차공업(주)	20.11	141.57	397.32	55.88
(주)기아기공*	11.03	110.61	806.52	55.64
기아특수강(주)*	15.92	79.88	528.04	71.65
기아	17.61	81.22	467.72	52.47
한화에너지*	8.66	72.35	1054.47	64.82
한화종합화학(주)	25.99	117.31	284.72	61.48
(주)한화	27.85	76.31	259.02	56.64
한화	17.47	76.00	472.33	61.64
롯데제과(주)	14.19	56.08	604.85	37.67
호남석유화학(주)	32.67	73.98	206.09	47.51
롯데	37.46	88.51	166.92	29.38
(주)금호*	14.77	60.85	576.85	66.32
금호석유화학(주)	65.30	102.89	53.15	20.31
(주)아시아나항공*	1.28	37.33	7726.25	49.98
금호	20.94	101.57	375.71	54.50
대림요업(주)	32.54	88.35	207.33	44.88
대림콘크리트공업(주)	36.25	106.88	175.87	46.98
대림	15.37	126.14	550.42	58.92

〈附錄 1〉의 계속

(單位 :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동양맥주(주)	20.12	44.01	397.13	49.54
두산	16.31	85.69	512.91	56.94
동아건설산업(주)	21.84	128.30	357.93	55.44
대한통운(주)	31.71	100.36	215.38	34.32
동아건설	17.65	128.10	466.35	52.12
(주)한일합섬	11.88	80.58	741.83	76.72
경남모직(주)	39.25	179.33	154.76	50.14
한일	11.58	92.29	763.27	71.28
동양나이론(주)*	24.78	68.83	303.58	56.57
효성중공업(주)	33.17	96.25	201.44	40.39
효성	26.13	95.41	282.57	52.45
동국제강(주)	42.76	88.24	133.86	32.15
한국철강(주)*	32.85	98.92	204.44	38.00
동국제강	36.42	100.99	174.50	36.64
삼미종합특수강(주)	10.22	87.44	878.18	68.69
삼미	3.03	71.03	3199.58	69.86
반도기계(주)	20.63	53.75	384.65	46.09
한라중공업(주)*	−39.74	32.72	−351.64	106.96
한라	2.47	56.13	3942.85	65.47
(주)코오롱	29.19	79.35	242.63	47.45
코오롱유화(주)	31.88	124.28	213.72	41.49
코오롱	26.88	107.67	271.98	42.24
(주)진로	19.03	128.91	425.39	58.87
진로	2.37	87.69	4115.12	71.31
동부제강	30.08	112.22	232.41	32.52
동부	25.30	99.74	295.17	42.92
고려합섬(주)	14.20	45.23	604.27	75.10
고려종합화학(주)*	4.34	12.39	2202.27	92.90
고려석유화학(주)*	9.90	38.23	910.14	71.36
고합	13.55	47.72	637.58	72.45
극동건설(주)	21.30	158.27	369.46	48.61
극동요업(주)	53.70	142.13	86.21	22.80
극동건설	19.43	141.35	380.34	44.44
(주)우성건설	13.41	196.12	645.94	64.11
우성건설	9.32	148.14	972.15	67.07
(주)벽산	27.08	108.53	269.24	49.80
벽산건설(주)*	11.66	113.77	757.64	65.85
벽산	15.80	111.72	532.71	58.07
(주)삼양사	24.67	106.46	305.34	49.63
삼남석유화학(주)	25.63	85.05	290.21	45.84
삼양	−	−	−	−

註 : *는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재무구조가 나쁜기업(4개의 지표 중 3개 이상이 소속대기업집단의 평균보다 안좋은 기업)을 의미.

資料 :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DB」.

〈附錄 2〉 主力企業의 負債比率 現況(1991~1994년)

〈1991년〉 (單位 : 個)

	1~200%	201~300%	301~400%	401% 이상	자본잠식	계
1~5대	1	3	2	8	0	14
6~30대	10	17	10	21	3	61
계	11	20	12	29	3	75

〈1992년〉 (單位:個)

	1~200%	201~300%	301~400%	401% 이상	자본잠식	계
1~5대	0	3	3	7	0	13
6~30대	8	18	8	23	3	60
계	8	21	11	30	3	73

〈1993년〉 (單位:個)

	1~200%	201~300%	301~400%	401% 이상	자본잠식	계
1~5대	2	2	3	7	0	14
6~30대	13	18	6	25	0	62
계	15	20	9	32	0	76

〈1994년〉 (單位:個)

	1~200%	201~300%	301~400%	401% 이상	자본잠식	계
1~5대	2	3	2	7		14
6~30대	8	20	8	28		64
계	10	23	10	35		78

〈附錄 3〉 主力企業의 內部持分率 現況(1991~1994년)

〈1991년〉 (單位 : 個)

	1~10%	11~20%	21~30%	31~50%	51~99%	100%	계
1~5대	1	2	2	3	3	3	14
상 장	1	2	2	2	0	0	7
비 상 장	0	0	0	1	3	3	7
6~30대	3	9	14	19	12	4	61
상 장	3	7	14	17	4	0	45
비 상 장	0	2	0	2	8	4	16
계	4	11	16	22	15	7	75
상 장	4	9	16	19	4	0	52
비 상 장	0	2	0	3	11	7	23

〈1992년〉 (單位 : 個)

	1~10%	11~20%	21~30%	31~50%	51~99%	100%	계
1~5대	1	2	1	1	5	3	13
상 장	1	2	1	1	1	0	6
비 상 장	0	0	0	0	4	3	7
6~30대	2	11	12	20	11	4	60
상 장	2	11	12	18	3	0	46
비 상 장	0	0	0	2	8	4	14
계	3	13	13	21	16	7	73
상 장	3	13	13	19	4	0	52
비 상 장	0	0	0	2	12	7	21

〈附錄 3〉의 계속

〈1993년〉 (單位 : 個)

	1~10%	11~20%	21~30%	31~50%	51~99%	100%	계
1~5대	1	2	4	0	6	1	14
상 장	1	2	4	0	1	0	8
비 상 장	0	0	0	0	5	1	6
6~30대	3	11	16	16	14	2	62
상 장	3	11	16	13	3	0	46
비 상 장	0	0	0	3	11	2	16
계	4	13	20	16	20	3	76
상 장	4	13	20	13	4	0	54
비 상 장	0	0	0	3	16	3	22

〈1994년〉 (單位 : 個)

	1~10%	11~20%	21~30%	31~50%	51~99%	100%	계
1~5대	1	2	4	1	4	2	14
상 장	1	2	4	1	1	0	9
비 상 장	0	0	0	0	3	2	5
6~30대	3	13	18	14	14	2	64
상 장	3	13	18	11	2	0	47
비 상 장	0	0	0	3	12	2	17
계	4	15	22	15	18	4	78
상 장	4	15	22	12	3	0	56
비 상 장	0	0	0	3	15	4	22

〈附錄 4〉 主力企業의 自己資本比率 推移(1991~1994년)

(單位 : %)

계열	업체	1991	1992	1993	1994
삼성	삼성중공업	14.9	16.9	24.9	23.6
	삼성전자	18.0	18.5	24.4	31.5
	삼성종합화학	18.9	18.8	12.4	17.7
현대	현대자동차	16.2	17.7	22.6	22.9
	현대전자산업	11.2	10.1	14.8	13.7
	현대정유			8.5	3.9
대우	대우자동차	4.1	0.1	14.6	13.7
	대우중공업				39.1
LG	LG화학	29.3	28.8	31.0	31.1
	LG전자	21.3	23.9	34.3	28.2
	LG반도체	9.6	20.0	25.2	33.9
한진	대한항공	11.2	11.3	10.4	12.5
	한진중공업			15.9	17.8
	한진건설			14.9	18.3
기아	아세아자동차	21.3	19.9	20.7	20.1
	기아기공	16.6	13.0	11.7	11.0
	기아특수강	20.0	20.6	19.3	15.9
쌍용	쌍용양회	45.4	32.5	34.9	31.1
	쌍용정유	42.7	41.0	42.9	38.3
	쌍용자동차	29.8	27.4	18.3	9.4
선경	유공	32.3	29.7	29.9	26.7
	SKC	11.0	11.2	11.3	12.1
	선경인더스트리	17.4	35.4	36.2	33.8
대림	대림요업	32.1	32.9	32.9	32.5
	대림콘크리트	55.0	46.0	40.5	36.2
한화	한화종합화학	30.4	26.3	26.2	26.0
	한화	32.4	28.7	27.8	27.9
	한화에너지	17.7	11.7	11.2	8.7
한일	한일합섬	21.7	14.1	7.8	11.9
두산	동양맥주	37.8	32.6	30.1	20.1
	두산음료			8.1	8.7
	두산건설			16.4	16.7
동국제강	동국제강	43.1	38.3	40.1	42.8
	한국철강	35.3	30.7	27.9	32.8
	연합철강	36.7	35.8	33.9	53.2
금호	금호	19.2	19.4	17.9	14.8
	금호석유화학	53.3	58.1	62.2	65.3
	아시아나항공	4.5	4.2	0.4	1.3

〈附錄 4〉의 계속

(單位 : %)

계열	업체	1991	1992	1993	1994
고려합섬	고려합섬	18.6	17.0	14.7	14.2
	고려석유화학	13.7	10.1	12.3	9.9
	고합물산			29.1	29.0
효성	효성중공업	13.0	13.9	39.9	33.2
	동양나이론	25.6	25.2	25.4	24.8
	동양폴리에스터			32.8	24.6
우성건설	우성건설	13.8	13.0	14.1	13.4
	우성유통				17.0
롯데	호남석유화학	35.7	32.9	26.6	32.7
	롯데제과	15.6	16.2	16.2	14.2
	롯데쇼핑			18.3	17.7
삼미	삼미종합목수강	27.1	20.0	12.0	10.2
	삼미			21.4	15.4
코오롱	코오롱	26.8	26.0	30.0	29.2
	코오롱유화	41.9	37.7	35.8	31.9
	코오롱상사			31.6	29.4
동아건설	동아건설	17.0	17.9	22.1	21.8
	대한통운	24.0	24.7	32.4	31.7
한라	만도기계	25.4	27.0	22.7	20.6
	한라공조			35.3	30.0
해태	해태유통			17.0	23.0
	해태상사			12.3	15.1
한보	한보철강공업				15.8
극동건설	극동건설	27.2	23.1	21.4	21.3
	극동요업	30.0	30.1	47.8	19.8
	국제종합건설			10.3	8.5
삼양사	삼양사	30.8	31.7	30.5	26.8
	삼남석유화학	11.0	17.1	28.5	36.1
	선일포도당공업			28.3	25.9
벽산	벽산건설	13.1	14.3	13.1	11.7
	벽산	30.8	33.8	31.2	27.1
	벽산개발			13.2	15.5
동부	동부제강	27.4	25.6	30.1	30.1
	동부고속			12.2	11.3
	동부산업			34.2	28.7
진로	진로	23.8	17.9	20.3	19.0
	진로종합식품			15.1	20.0
	진로쿠어스맥주				7.8

註 : 1995년 말 현재 주력기업 기준.

〈附錄 5〉 業種專門化 施策 關聯 主要 規定

1. 工業發展法

第10條(合理化事業에 대한 지원) ① 政府는 業種別合理化計劃을 실시하는 合理化事業者에 대하여 金融·租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政府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0條의 2(資源節約的 構造轉換促進施策의 수립)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資源使用이 효율적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이하 "資源節約的 構造轉換促進施策"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改正 95. 11. 22〉.

② 資源節約的 構造轉換促進施策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工業의 資源使用現況 및 資源需給展望
2. 産業部門別 資源使用構造의 개선방안
3. 資源節約的 設備의 活用 및 技術開發의 촉진방안
4. 기타 工業의 資源節約的 構造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通商産業部長官이 資源節約的 構造轉換促進施策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發展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 11. 22〉, [條件設備 95. 1. 5].

第10條의 3(業種專門化誘導施策) 通商産業部長官은 工業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者가 영위하는 업종의 專門化를 유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할 수 있다〈改正 95. 11. 22〉, [條件設備 95. 1. 5].

2.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및 施行令

法律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 ①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를 제외한다)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다른 國內會社株式의 帳簿價格의 合計額(이하 '出資總額'이라 한다)이 당해 會社 純資產額에 100分의 25를 곱한 금액(이하 '出資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2. 12. 8, 94. 12. 22〉.

1. 工業發展法 또는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合理化計劃 또는 合理化基準에 따라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4年 이내에 한하되 公正去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年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株式에 대한 新株의 配定 또는 당해 株式에 대한 株式配當으로 新株를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2年 이내에 한한다.
3. 擔保權의 實行 또는 貸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1年 이내에 한한다.
4. 事業年度 末 決算確定의 결과 保有株式의 評價가 증가되어 出資總額이 出資限度額을 초과한 경우. 다만, 決算이 확정된 날부터 1年 이내에 한한다.
5. 部品生產中小企業과의 技術協力關係의 유지를 위한 出資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產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가 당해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를 인정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7年 이내에 한한다.

②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第1種施設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立된 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公正去來委員會가 당해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

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20年 이내로 하되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年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新設 94. 12. 22〉.

③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로서 株式所有의 分散 및 財務構造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會社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新設 94. 12. 22〉.

④ 第1項에서 '純資産額'이라 함은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에 표시된 資産의 總計에서 負債의 總計 및 國庫補助金과 直前事業年度 終了日 현재 당해 會社에 대하여 出資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出資金額(所有株式數에 1株當 額面價格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새로 設立된 會社로서 直前事業年度의 貸借對照表가 없는 경우에는 設立 당시의 納入資本金에서 당해 會社에 대하여 出資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을 純資産額으로 보며, 會社設立日 또는 直前事業年度終了日 이후 新株의 발행, 合併 또는 轉換社債의 轉換으로 純資産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서 당해 會社에 대한 系列會社의 出資金額을 뺀 금액을 합하여 計算한다〈改正 92. 12. 8〉.

⑤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되어 다른 會社에 대한 出資總額이 出資限度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3年間은 초과한 날의 出資總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改正 94. 12. 22〉.

⑥ 第5項의 期間이 경과한 후 純資産額이 더욱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날부터 3年間은 그 감소 전의 出資限度額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期間 경과 후 出資限度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4. 12. 22〉.

⑦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5項 및 第6項에서 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4. 12. 22〉.

⑧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純資産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수정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施行令 第17條의2(産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出資의 要件) 法 第10條 第1項 第5號에서 "部品生産中小企業과의 기술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한 출자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改正 95. 4. 1〉.

1. 原料 또는 部品을 생산공급하는 中小企業과의 기술지도 및 협력관계유지를 위하여 당해 중소기업의 株式을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國內産業의 競爭力 向上에 긴요한 기술로서 국내에서 獨自的으로 개발이 곤란하거나 外國으로부터의 도입이 불가피하여 해당 기술의 共同開發 또는 導入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株式을 당해 회사와 관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取得 또는 所有하는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이 요청하는 경우.
3. 通商産業部長官이 수립한 業種專門化誘導施策에 의하여 업종을 專門化하도록 선정된 기업(이하 '主力企業'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 중 上場法人이 동일 企業集團에 속하는 主力企業의 新株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와 上場法人인 主力企業(資産總額順位 1위 내지 5위의 企業集團 소속 회사를 제외한다)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동일한 主力業種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전업률이 100분의 70 이상인 기업의 新株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銀行法 및 施行令

法律 第27條(禁止業務) ① 金融機關은 다음의 業務를 할 수 없다〈改

正 69. 1. 28, 77. 12. 30, 82. 12. 31, 91. 12. 31, 94. 12. 31〉.

1. 削除〈66. 7. 28〉

2. 業務遂行上 필요한 不動産 외의 不動産의 所有. 다만, 抵當權 등 擔保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取得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取得 후에는 遲滯없이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2의 2. 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을 초과하는 業務用 不動産에 대한 投資

3. 商品 또는 有價證券의 投機를 目的으로 하는 資金의 貸出

4. 同一한 個人 또는 法人에 대한 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貸出. 다만,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承認하는 경우와 韓國銀行法에 의한 政府代行機關에 대한 貸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同一한 個人 또는 法人에 대한 金融機關의 自己資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 다만,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承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直接, 間接에 불구하고 當該 金融機關의 株式 또는 他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株式을 擔保로 하는 貸出

6. 直接, 間接에 불구하고 當該 金融機關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貸出

7. 直接, 間接에 불구하고 政治資金의 貸出

8. 當該 金融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貸出. 다만,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정하는 少額貸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金融機關의 株式의 買入 또는 항구적 所有. 다만,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 他株式會社의 發行株式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株式의 買入 또는 항구적 所有(이하 '子會社 貸出'이라 한다). 다만, 子會社 貸出의 總合計額이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정하는 業種에 속하는 會社의 株式을 買入 또는 所有하는 경우 및 子會社 出資의 總合計額이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第10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子會社 出資를 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子會社에 대한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貸出 기타 信用供與
12.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擔保로 하는 貸出과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株式을 買入시키기 위한 대출
13. 당해 金融機關의 子會社의 任員 또는 職員에 대한 대출. 다만,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정하는 少額貸出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 第4號 및 第4號의 2의 規定에 의한 貸出,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의 種類와 承認의 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2. 12. 31〉.

③ 第1項 第5號, 第6號, 第9號, 第10號, 第11號 및 第12號의 株式의 범위 내에는 出資持分이 포함된다〈新設 82. 12. 31, 91. 12. 31, 94. 12. 31〉.

④ 金融機關은 第1項 第10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子會社 出資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94. 12. 31〉.

施行令 第7條(여신의 한도 등) ① 法 第27條 第1項 第4號 但書 및 同項 第4號의 2 但書에서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중 當該 기업의 國民經濟的 重要性, 財務狀態, 金融機關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改正 95. 4. 28〉.

1. 外貨를 획득하거나 節約하는 데 寄與하는 경우

2. 産業發展의 기초가 되는 物資나 에너지를 生産하는 경우
3. 國民生活安定에 필요한 生活必需品을 생산하거나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4. 工業發展法 第10條의 3의 規定에 의한 業種專門化 誘導施策 推進 등 산업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이 貸出 또는 債務의 保證이나 引受를 承認할 수 있는 범위는 대출의 경우에는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00분의 20, 債務의 保證이나 인수의 경우에는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00분의 35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改正 92. 5. 29, 95. 4. 28〉.

1. 外國銀行 支店이 取扱하는 貸出 또는 債務의 保證이나 引受
2. 政府가 全額出資한 법인에 대한 貸出 또는 債務의 保證이나 引受
3.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者 中 건전한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채무의 보증이나 인수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貸出 또는 債務의 보증이나 인수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換率變動에 따른 원화환산액의 증가 또는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支給保證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當該 企業에 대한 貸出이나 債務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金融機關 自己資本의 100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다〈改正 95. 4. 28〉.